

# **이H**은평뉴타운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1지구(A공구 1,2,12블럭,  
B공구 3,4,10,11,13,14블럭, C공구 5,6,7,8블럭) 및 2지구 A공구(1,12,13블럭)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 공사

[www.i-sh.co.kr](http://www.i-sh.co.kr)



# SH 은평뉴타운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1지구(A공구 1,2,12블럭, B공구 3,4,10,11,13,14블럭, C공구 5,6,7,8블럭) 및 2지구 A공구(1,12,13블럭)

## ■ 은평뉴타운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 인터넷 청약 안내

- 청약신청은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홈페이지(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령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하신 분은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방문 접수하실 수 있음.
- 은평뉴타운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청약접수 전에 과거 당첨 사실 또는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 금회 공급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부적격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향후 일정기간(전용85㎡ 이하 주택 10년, 전용85㎡초과 주택 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당첨이 제한되므로 금융결제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의청약 체험을 권장.

###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전용85㎡ 이하 주택 7년, 전용85㎡초과 주택 5년)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포함)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일정기간(전용85㎡ 이하 주택 10년, 전용85㎡초과 주택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사이버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및 주택전시관 관람 안내

- 은평뉴타운 2지구는 당첨자(1지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포함)를 대상으로 견본주택을 2008.9.19(금)~21(일)[10:00~17:00] 기간동안 공개할 예정이고, 2008.8.4(월)부터 인터넷으로 사이버모델하우스 관람이 가능하며, 주택전시관(2지구 주택형)은 2007.11.15(목)[10:00~17:00]부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은평뉴타운 1지구는 아파트가 준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 입주세대가 있어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사이버모델하우스나 은평뉴타운 주택전시관(2지구 주택 모형임)과 2지구 A공구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우측하단 '사이버모델하우스' 선택]

## 전용면적 85㎡이하

### ■ 은평뉴타운 1지구(13개 블럭) 1,248세대 중 209세대 및 2지구(3개 블럭) 384세대 중 59세대

구 분	계	1지구 A공구	1지구 B공구	1지구 C공구	2지구 A공구
전용84㎡	268	68	64	77	59

### ■ 1지구 A공구 1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7~15개층 11개동 분양아파트 145세대 중 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 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당 공용면적(㎡)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기한		
	노부모 우선	일반	노부모 우선	일반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공급세대수					
								전 용	주 거 공용	계						3자녀 특별				기타 특별	노부모 우선
국 민 주 택	81876-01	81877-01	2008760001(01)	2008760002(01)	106.1890	84A	확장일반형	84.790	20.979	105.769	58.571	(54.434)	164.340	67.739	9		1	7	814,817,819,820	8	'09.1.9
								84J	확장일반형	84.840	21.349	106.189	58.606	(54.466)	164.795	67.779	5			5	
	81876-02	81877-02	2008760001(02)	2008760002(02)	105.7690	84A	비확장일반	84.790	20.979	105.769	58.571	(54.434)	164.340	67.739	15	1	3	3	8	812	

###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 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 (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기 금 융자금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국 민 주 택	106.1890	84A	확장일반형	2	7~8	346,193	69,238	34,619	34,619	127,717	80,000
				4	3~6(819동 604호 제외)	339,937	67,987	33,994	33,994	123,962	80,000
				5	819동 604호	336,810	67,362	33,681	33,681	122,086	80,000
				7	814동 204호	330,555	66,111	33,056	33,056	118,332	80,000
	105.7690	84A	비확장일반	2	7~8	347,567	69,513	34,757	34,757	128,540	80,000
				4	3~6	341,287	68,257	34,129	34,129	124,772	80,000
				6	2	335,007	67,001	33,501	33,501	121,004	80,000
				2	7~10	346,193	69,238	34,619	34,619	127,717	80,000
4	3~6	339,937	67,987	33,994	33,994	123,962	80,000				

■ 1지구 A공구 2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6~15개층 9개동 분양아파트 49세대 중 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층당 공급대수(㎡)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기한		
	노부모 우선	일반	노부모 우선	일반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3자녀 특별	기타 특별				노부모 우선	일반
국민주택	-	81878-01	-	2008760003(01)	106.1270	84A	확장형일반	84.790	21.471	106.261	51.329	(46.215)	157.590	74.484	3			3	805,806	6	'09.1.9	
						84B	확장형일반	84.420	23.762	108.182	51.106	(46.014)	159.288	74.159	3			3	805	6		
						C84B	확장형일반	84.390	21.737	106.127	51.087	(45.997)	157.214	74.133	1			1	801	5		
						C84C	확장형일반	84.730	22.170	106.900	51.294	(46.183)	158.194	74.432	3			3	801	5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 (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기금 융자금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국민주택	106.1270	84A	확장형일반	4	3~6	335,710	67,142	33,571	33,571	121,426	80,000
				7	1	323,050	64,610	32,305	32,305	113,830	80,000
		84B	확장형일반	4	3~6	341,780	68,356	34,178	34,178	125,068	80,000
				7	1	328,892	65,778	32,889	32,889	117,336	80,000
		C84B	확장형일반	4	3~6	335,287	67,057	33,529	33,529	121,172	80,000
				4	3~6	337,729	67,545	33,773	33,773	122,638	80,000
		C84C	확장형일반	4	3~6	331,361	66,272	33,136	33,136	118,817	80,000
				5	2						

■ 1지구 A공구 12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0~15개층 10개동 분양아파트 253세대 중 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층당 공급대수(㎡)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기한		
	노부모 우선	일반	노부모 우선	일반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3자녀 특별	기타 특별				노부모 우선	일반
국민주택	81879-01	81880-01	2008760004(01)	2008760005(01)	110.8660	84A	확장형일반	84.790	23.738	108.528	43.879	(40.319)	152.407	71.406	14	1	2	2	9	823,824,827,828,830	10	'09.1.9
						84C	확장형일반	84.830	26.036	110.866	43.900	(40.338)	154.766	71.440	1			1	821	5		
	84E	확장형일반	84.970	25.896	110.866	43.973	(40.405)	154.839	71.558	4			4	821,822	11							
	81879-02	81880-02	2008760004(02)	2008760005(02)	108.5280	84A	비확장일반	84.790	23.738	108.528	43.879	(40.319)	152.407	71.406	10		2	2	6	829	10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 (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기금 융자금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국민주택	110.8660	84A	확장형일반	2	7~11	363,040	72,608	36,304	36,304	137,824	80,000
				3	3~6	356,292	71,258	35,629	35,629	133,776	80,000
				5	2(827동 207호제외)	349,544	69,908	34,954	34,954	129,728	80,000
				6	827동 207호	346,170	69,234	34,617	34,617	127,702	80,000
				7	1	342,797	68,559	34,280	34,280	125,678	80,000
				7	1	342,797	68,559	34,280	34,280	125,678	80,000
		84C	확장형일반	3	3~6	363,967	72,793	36,397	36,397	138,380	80,000
				2	7~12	370,860	74,172	37,086	37,086	142,516	80,000
		84E	확장형일반	3	3~6	363,967	72,793	36,397	36,397	138,380	80,000
				2	7~10	363,040	72,608	36,304	36,304	137,824	80,000
108.5280	84A	비확장일반	3	3~6	356,292	71,258	35,629	35,629	133,776	80,000	
			5	2	349,544	69,908	34,954	34,954	129,728	80,000	

■ 1지구 A공구(1,2,12블럭)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면적 내역

구분	84A	84B	84C	84E	84J	C84B	C84C
확장 금액(천원)	3,214	3,273	3,754	3,884	3,306	3,631	1,799
확장 면적(㎡)	14.63	14.90	17.09	17.68	15.05	16.53	8.19

■ 1지구 B공구 3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8~15개층 3개동 분양아파트 103세대 중 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층당 공급대수(㎡)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기한		
	노부모 우선	일반	노부모 우선	일반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3자녀 특별	기타 특별				노부모 우선	일반
국민주택	-	81881-01	-	2008760006(01)	112.8120	84A	확장형일반	84.790	28.022	112.812	49.073	(44.037)	161.885	66.963	7			7	707	7	'09.1.9	
						84C	확장형일반	84.830	30.363	115.193	49.096	(44.057)	164.289	66.995	3			3	707	5		
						84E	확장형일반	84.970	30.169	115.139	49.177	(44.130)	164.317	67.106	1			1	707	1		
						NC84K	확장형일반	84.930	28.789	113.719	49.154	(44.109)	162.873	67.074	2			2	708	3		
-	81881-02	-	2008760006(02)	114.6790	복NC84C	복층형	84.970	29.709	114.679	49.177	(44.130)	163.857	67.106	1			1	708	6			
					복NC84L	복층형	84.970	29.709	114.679	49.177	(44.130)	163.857	67.106	1			1	708	6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 (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기금 융자금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국민주택	112.8120	84A	확장형일반	2	7	351,177	70,235	35,118	35,118	130,706	80,000		
				3	3~6	344,686	68,937	34,469	34,469	126,811	80,000		
				5	2	338,195	67,639	33,820	33,820	122,916	80,000		
				3	3~6	351,962	70,392	35,196	35,196	131,178	80,000		
				5	2	345,333	69,066	34,533	34,533	127,201	80,000		
				7	707동 101호	335,234	67,046	33,523	33,523	121,142	80,000		
		114.6790	복NC84C	복층형	복층형	4	708동 619호	366,562	73,312	36,656	36,656	139,938	80,000
						4	708동 621호	366,562	73,312	36,656	36,656	139,938	80,000
						3	3~6	347,458	69,491	34,746	34,746	128,475	80,000
						5	2	340,915	68,183	34,092	34,092	124,548	80,000

■ 1지구 B공구 4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8~15개층 4개동 93세대 중 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층당 공급면적(㎡)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기한			
	노부모 우선	일반	노부모 우선	일반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3자녀 특별				기타 특별	노부모 우선	일반
국민주택	81882-01	81883-01	2008760007(01)	2008760008(01)	114.6740	84A	확장형일반	84.790	28.850	113.640	55.557	(49.596)	169.197	71.079	5	1		1	3	703	6	'09.19
								84.830	31.191	116.021	55.583	(49.620)	171.604	71.112	1			1	3	703	7	
								84.930	30.168	115.098	55.648	(49.678)	170.746	71.196	2				2	702	4	
								84.990	29.684	114.674	55.688	(49.713)	170.362	71.247	1				1	702	5	
	81882-02	81883-02	2008760007(02)	2008760008(02)	115.5090	복NC84B	복층형	84.970	44.519	129.489	55.675	(49.702)	185.164	71.230	4			1	3	702	6	
								84.970	30.539	115.509	55.675	(49.702)	171.184	71.230	2				2	702	6	
	81882-03	81883-03	2008760007(03)	2008760008(03)	113.6400	84A	비확장일반	84.790	28.850	113.640	55.557	(49.596)	169.197	71.079	6		3	1	2	704	8	
								84.420	31.108	115.528	55.315	(49.380)	170.844	70.769	3				3	704	6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 (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기금 융자금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국민주택	114.6740	84A	확장형일반	3	3~6	344,727	68,945	34,473	34,473	126,836	80,000
						338,291	67,658	33,829	33,829	122,975	80,000
						328,637	65,727	32,864	32,864	117,182	80,000
						358,521	71,704	35,852	35,852	135,113	80,000
	115.5090	NC84D	확장형일반	3	3~5	349,151	69,830	34,915	34,915	129,491	80,000
						342,632	68,526	34,263	34,263	125,580	80,000
						347,864	69,572	34,786	34,786	128,720	80,000
						406,909	81,381	40,691	40,691	164,146	80,000
	113.6400	복NC84B	복층형	4	702동 304호,609호	359,577	71,915	35,958	35,958	135,746	80,000
						351,162	70,232	35,116	35,116	130,698	80,000
113.6400	84A	비확장일반	3	3~6	344,727	68,945	34,473	34,473	126,836	80,000	
					338,291	67,658	33,829	33,829	122,975	80,000	
					350,455	70,091	35,046	35,046	130,272	80,000	
					343,912	68,782	34,391	34,391	126,348	80,000	

■ 1지구 B공구 10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7~11개층 4개동 40세대 중 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층당 공급면적(㎡)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기한			
	노부모 우선	일반	노부모 우선	일반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3자녀 특별				기타 특별	노부모 우선	일반
국민주택	-	81884-01	-	2008760009(01)	108.7920	84A	확장형일반	84.790	24.002	108.792	43.150	(34.765)	151.942	81.20	1			1	712	2	'09.19	
								84.420	26.282	110.702	42.962	(34.613)	153.663	80.84	1			1	712	6		
								84.840	24.363	109.203	43.175	(34.786)	152.378	81.25	1			1	711	4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 (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기금 융자금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국민주택	108.7920	84A	확장형일반	5	2	342,652	68,530	34,265	34,265	125,592	80,000
						355,517	71,103	35,552	35,552	133,310	80,000
						350,704	70,140	35,070	35,070	130,424	80,000

■ 1지구 B공구 11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8~15개층 6개동 46세대 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층당 공급면적(㎡)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기한			
	노부모 우선	일반	노부모 우선	일반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3자녀 특별				기타 특별	노부모 우선	일반
국민주택	-	81885-01	-	2008760010(01)	106.1930	84K	확장형일반	84.950	30.243	115.193	52.326	(46.915)	167.519	76.74	4			4	716,717,718	6	'09.19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 (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기금 융자금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국민주택	106.1930	84K	확장형일반	3	3~6	360,537	72,107	36,054	36,054	136,322	80,000
						353,773	70,754	35,377	35,377	132,265	80,000

■ 1지구 B공구 13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9~15개층 11개동 28세대 중 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층당 공급면적(㎡)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기한			
	노부모 우선	일반	노부모 우선	일반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3자녀 특별				기타 특별	노부모 우선	일반
국민주택	-	81886-01	-	2008760011(01)	107.4580	NM84D	비확장일반	84.630	22.828	107.458	42.343	(39.596)	149.801	75.80	12			12	720	7	'09.19	
								84.630	22.958	107.588	42.343	(39.596)	149.931	75.80	4			4	720	7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기금 용자금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국민 주택	107.4580	NM84D	비확장일반	2	7	344,927	68,985	34,493	34,493	126,956	80,000
				3	3~6	338,474	67,694	33,847	33,847	123,086	80,000
				4	2	332,021	66,404	33,202	33,202	119,213	80,000
				5	1	325,568	65,113	32,557	32,557	115,341	80,000
		NM84E	비확장일반	2	7	345,345	69,069	34,535	34,535	127,206	80,000
				3	3~6	338,884	67,776	33,888	33,888	123,332	80,000
				4	2	332,424	66,484	33,242	33,242	119,456	80,000

■ 1지구 B공구 14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7~15개층 13개동 16세대 중 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층당 공용 면적 (㎡)	공급세대수				해당 평면 최고 층수	입주 기한			
	노부모 우선	일반	노부모 우선	일반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 공용	계						3자녀 특별	기타 특별			노부모 우선	일반	
국민 주택	-	81887-01	-	2008760012(01)	106.8840	NM84D	확장형일반	84.630	22.254	106.884	44.797	(41.737)	151.681	77.29	2				2	742	4	'09.1.9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기 금 용 자 금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국민 주택	106.8840	NM84D	확장형일반	3	3~5	330,287	66,057	33,029	33,029	118,172	80,000

■ 1지구 B공구(3,4,10,11,13,14블럭)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면적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84A	84B	84C	84E	84J	84K	NC84D	NC84D2	NC84K	복NC84B	복NC84C	복NC84L
금액	3,209	3,273	3,754	3,882	3,300	3,800	4,196	3,770	4,246	2,623	2,623	2,623
면적	14.61	14.90	17.09	17.67	15.02	17.30	19.10	17.16	19.33	11.40	11.40	11.40

■ 1지구 C공구 5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6~15개층 8개동 92세대 중 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층당 공용 면적 (㎡)	공급세대수				해당 평면 최고 층수	입주 기한			
	노부모 우선	일반	노부모 우선	일반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 공용	계						3자녀 특별	기타 특별			노부모 우선	일반	
국민 주택	-	81888-01	-	2008760013(01)	105.9980	84A	확장형일반	84.790	21.208	105.998	62.057	(56.155)	168.055	77.288	4				4	624,625	4	'09.1.9
						C84C	확장형일반	84.910	30.800	115.710	62.144	(56.234)	177.854	77.397	1			1	629	3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기 금 용 자 금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국민 주택	105.9980	84A	확장형일반	3	3~6	338,217	67,643	33,822	33,822	122,930	80,000
				5	2	331,988	66,397	33,199	33,199	119,193	80,000
				C84C	확장형일반	3	3~5	369,205	73,841	36,921	36,921

■ 1지구 C공구 6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0~15개층 7개동 106세대 중 2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층당 공용 면적 (㎡)	공급세대수				해당 평면 최고 층수	입주 기한			
	노부모 우선	일반	노부모 우선	일반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 공용	계						3자녀 특별	기타 특별			노부모 우선	일반	
국민 주택	81889-01	81890-01	2008760014(01)	2008760015(01)	108.5370	84A	확장형일반	84.790	23.337	108.127	53.374	(48.712)	161.501	65.896	15	1	2	2	10	616,617	9	'09.1.9
	81889-02	81890-02	2008760014(02)	2008760015(02)	108.1270	84A	비확장일반	84.790	23.337	108.127	53.374	(48.712)	161.501	65.896	10		2	2	6	620	8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기 금 용 자 금
							계약금 (2008.10.8)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국민 주택	108.5370	84A	확장형일반	2	7~9	338,728	67,745	33,873	33,873	123,237	80,000
				3	3~6	333,347	66,669	33,335	33,335	120,008	80,000
				2	7~8	338,728	67,745	33,873	33,873	123,237	80,000
	108.1270	84A	비확장일반	3	3~6	333,347	66,669	33,335	33,335	120,008	80,000
				4	2	327,965	65,593	32,797	32,797	116,778	80,000

■ 1지구 C공구 7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9~15개층 9개동 166세대 중 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층당 공용 면적 (㎡)	공급세대수				해당 평면 최고 층수	입주 기한			
	노부모 우선	일반	노부모 우선	일반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 공용	계						3자녀 특별	기타 특별			노부모 우선	일반	
국민 주택	81891-01	81892-01	2008760016(01)	2008760017(01)	107.5080	84A	확장형일반	84.790	22.308	107.098	46.430	(42.085)	153.528	77.567	9		1	1	7	606,607,613	8	'09.1.9
						84E	확장형일반	84.970	24.264	109.234	46.530	(42.175)	155.764	77.732	1			1	607	7		
						84J	확장형일반	84.840	22.668	107.508	46.458	(42.110)	153.966	77.613	1			1	613	5		
						84K	확장형일반	84.950	31.150	116.100	46.519	(42.165)	162.619	77.714	2			2	611,612	12		
	81891-02	81892-02	2008760016(02)	2008760017(02)	107.0980	84A	비확장일반	84.790	22.308	107.098	46.430	(42.085)	153.528	77.567	19	2	4	4	9	609,614	8	
						84E	비확장일반	84.970	24.264	109.234	46.530	(42.175)	155.764	77.732	9			9	609,614	8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기금 용자금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국민주택	107.5080	84A	확장형일반	2	7~9	343,887	68,777	34,389	34,389	126,332	80,000
				3	3~6	337,513	67,502	33,751	33,751	122,509	80,000
				5	1	324,765	64,953	32,477	32,477	114,858	80,000
		84E	확장형일반	2	7~8	350,746	70,149	35,075	35,075	130,447	80,000
		84J	확장형일반	3	3~6	338,805	67,761	33,881	33,881	123,282	80,000
	84K	확장형일반	2	7~13	372,792	74,558	37,279	37,279	143,676	80,000	
	107.0980	84A	비확장일반	2	7~8	343,887	68,777	34,389	34,389	126,332	80,000
				3	3~6	337,513	67,502	33,751	33,751	122,509	80,000
				4	2	331,139	66,227	33,114	33,114	118,684	80,000
		84E	비확장일반	2	7~8	350,746	70,149	35,075	35,075	130,447	80,000
3		3~6	344,244	68,848	34,424	34,424	126,548	80,000			
4	2	337,743	67,548	33,774	33,774	122,647	80,000				

■ 1지구 C공구 8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내 8블럭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9~13층 5개동 38세대 중 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호당 공용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 층수	입주 기한				
	노부모 우선	일반	노부모 우선	일반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 공용	계						3자녀 특별				기타 특별	노부모 우선	일반	
국민 주택	-	81893-01	-	2008760018(01)	109.0340	84A	확장형일반	84.790	22.109	106.899	46.149	(39.842)	153.048	84.022	2			2	603,604	5	'09.19		
								84E	확장형일반	84.970	24.064	109.034	46.247	(39.927)	155.281	84.201	1			1		603	4
								84A	비확장일반	84.790	22.109	106.899	46.149	(39.842)	153.048	84.022	3			3		602	6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기금 용자금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국민 주택	109.0340	84A	확장형일반	3	3~6	340,360	68,072	34,036	34,036	124,216	80,000										
												84E	확장형일반	3	3~6	347,157	69,431	34,716	34,716	128,294	80,000
												106.8990	84A	비확장일반	3	3~6	340,360	68,072	34,036	34,036	124,216

■ 1지구 C공구(5,6,7,8블럭)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면적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84A	84E	84J	84K	C84C
금액	3,212	3,884	3,302	3,800	2,370
면적	14.62	17.68	15.03	17.30	10.79

■ 2지구 A공구 1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2지구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9~15층 12개동 606세대 중 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호당 공용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 층수	입주 예정월				
	노부모 우선	일반	노부모 우선	일반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 공용	계						3자녀 특별				기타 특별	노부모 우선	일반	
국민 주택	-	81894-01	-	2008760019(01)	111.2330	84A	확장형일반	84.720	26.513	111.233	44.513	(42.462)	155.746	65.404	3			3	125,126,127	1	'09.02		
								84B	확장형일반	84.490	26.367	110.857	44.393	(42.347)	155.250	65.227	2			2		127	1
								84C	확장형일반	84.850	26.136	110.986	44.582	(42.527)	155.568	65.504	4			4		125,126	1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기금 용자금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입주시)											
국민 주택	111.2330	84A	확장형일반	5	1	356,795	71,359	35,680	35,680	134,076	80,000										
												84B	확장형일반	5	1	355,588	71,117	35,559	35,559	133,353	80,000
												84C	확장형일반	5	1	356,002	71,200	35,600	35,600	133,602	80,000

■ 2지구 A공구 12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2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6~20층 6개동 303세대 중 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호당 공용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 층수	입주 예정월					
	노부모 우선	일반	노부모 우선	일반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 공용	계						3자녀 특별				기타 특별	노부모 우선	일반		
국민 주택	81895-01	81896-01	2008760020(01)	2008760021(01)	111.3800	84A	비확장일반	84.720	27.038	111.758	48.531	(46.143)	160.289	62.568	19		3	3	13	106	15	'09.02		
								84B	비확장일반	84.490	26.890	111.380	48.398	(46.017)	159.778	62.398	25	2	3	3	17		106	15
	-	81896-02	-	2008760021(02)	111.7580	84A	확장형일반	84.720	27.038	111.758	48.531	(46.143)	160.289	62.568	4				4	102,105	1			
								84B	확장형일반	84.490	26.890	111.380	48.398	(46.017)	159.778	62.398	2				2		102,105	1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기금 용자금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입주시)	
국민 주택	111.3800	84A	비확장일반	1	15	363,439	72,687	36,344	36,344	138,064	80,000
				2	7~14	356,860	71,372	35,686	35,686	134,116	80,000
				3	3~6	350,282	70,056	35,028	35,028	130,170	80,000
				4	2	343,703	68,740	34,370	34,370	126,223	80,000
				6	1	333,836	66,767	33,384	33,384	120,301	80,000
				1	15	362,210	72,442	36,221	36,221	137,326	80,000
	111.7580	84B	비확장일반	2	7~14	355,653	71,130	35,565	35,565	133,393	80,000
				3	3~6	349,097	69,819	34,910	34,910	129,458	80,000
				5	106동 201호	339,263	67,852	33,926	33,926	123,559	80,000
				6	1	332,707	66,541	33,271	33,271	119,624	80,000
				6	1	333,836	66,767	33,384	33,384	120,301	80,000
				6	1	332,707	66,541	33,271	33,271	119,624	80,000

구 분	84A	84B	84C
금 액	5,261	6,171	6,122
면 적	12.90	15.13	15.01

- 금회 공급 물량은 은평뉴타운 2차 분양분으로서 1차 일반분양 또는 이주대책용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남은 잔여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실시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설공정이 80%를 초과하여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으며, 청약시 발코니 확장형 또는 비확장형을 선택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함.
- 금회 공급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위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세대별 국민주택기금이 대출되어 잔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용자금 상환조건은 대한일로부터 1년거치 19년 상환임.[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한(차주명의 변경)일 전날까지는 우리공사에서 차입한 이율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고, 대한일에 입주자가 용자금을 승계하며, 대한일 이후 상환이율은 연 5.2%(변동금리)임]
- 분양가격은 용자금(국민주택기금)이 포함된 경우로서 입주자가 용자금을 대한(승계)받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기한 내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납부하되, 세대별 용자금(국민주택기금)은 해당은행과 사전협의 후 은행에서 관리하는 아래 용자금(국민주택기금)상환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 계좌에 입금된 용자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대출금 상환에 충당되므로 세대별 용자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용자금(국민주택기금) 상환계좌 :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자금을 용자받았으나 입주자가 대한(용자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세대별 용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납부
    - 은평1지구 입주대상자 용자금(국민주택기금) 상환계좌 : 474501-01-070318(예금주 : 국민은행 개포동지점)
    - 은평2지구 입주대상자 용자금(국민주택기금) 상환계좌 : 1005-780-222444(예금주 : 우리은행 SH공사지점)
  - ※ 만약, 세대별 용자금을 상기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 또는 우리공사 계좌에 직접 납부할 경우에는 입주자 앞으로 용자 전환될 국민주택기금 용자금이 상환되지 않아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금액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옵션품목)의 금액이며,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분양가격은 각 세대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를 일반동 층고만큼을 1개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고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하였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의 면적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과 제6항에 의한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은 우리공사(1층)에서 직접 접수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함.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 3년 이상 부양(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기준)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금회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하는 것이며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 안내' 참조]
- 각 신청자격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됨.
- 분양대상 표에서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평면유형의 최상층 층고임.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방식이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계단실형 및 복도식의 세대조합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에 되돌려 드림)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신청자격

아래 신청자격 중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본인)와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신청 주택의 입주 시까지 무주택인 세대주를 말함.  
 ※ 2007.12.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7.30)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 3자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88.7.31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 기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에게 공급되며, 대상자는 해당기관(서울지방보훈청,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지역(1년 이상 계속 거주) 및 수도권(서울특별시지역 1년 미만 거주,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 동일 순위 경쟁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7.30)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07.7.31전 전입) 계속 거주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등에 관계없이 우선하게 됨.[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07.7.31 거주자부터 해당함)는 수도권 거주자로 간주됨]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입주자 모집공고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최근 당첨사실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자는 본인 및 세대원(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이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주택조합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순위("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 기준

- 3자녀 특별공급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청약통장으로 일반공급(노부모 부양 우선 공급 포함) 주택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3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함.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한 중복 청약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은 청약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중복 청약 및 당첨이 가능하나, 먼저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주택일 경우 먼저 당첨된 주택만 계약 가능
- 기타 특별공급
  - 일반공급에 청약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무효 및 계약 불가
- 일반공급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 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 청약 불가(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 동일세대(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전용85m<sup>2</sup>이하 주택에 중복 청약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무효 처리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한 중복 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동일세대(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하여 계약(중복 당첨되기 전에 먼저 당첨된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으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계약)



▶ 입주자선정방법(공통)

구분	입주자선정방법
특별공급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 선정 순위별로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구분 없이 입주자를 선정함.</li> <li>- 주택의 동호는 평면유형별,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에 따라 일반공급 신청자는 국민은행, 3자녀 및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는 SH공사 컴퓨터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함.</li> <li>-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이상(총30% 이내)을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3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 추첨 후 계약 체결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이 경우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li> <li>-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SH공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함.</li> <li>- 3자녀 및 기타 특별공급 신청 미달분은 주택형별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3자녀 및 기타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3자녀 및 기타 특별공급 부적격처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li> </ul>

▶ 3자녀 특별공급

• 입주자선정방법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금회 공급량의 3% 이내에서 배정된 주택형의 물량에 한하여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우선 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을 선정함.
- 전용면적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금회 공급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전용면적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블랙 및 동·호수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부적격 처리된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전용면적별 3자녀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아래 표 및 블랙별 분양대상 참조)
- 공급세대수

전용면적	계	서울특별시 거주자	경기도 거주자	인천광역시 거주자
85㎡	8	4	3	1

•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2명 이상	10	
	1명	5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인천·경기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기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로서 해당기관(서울지방보훈청,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자
-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금회 공급량의 10% 이내에서 특별 공급하되, 배정된 주택형의 물량에 한하여 공급하게 됨.
- 전용면적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금회 공급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해당 기관별로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선정·통보한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되, 블랙 및 동·호수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함.
- 기타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부적격 처리된 기타 특별공급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

• 입주자선정 방법 및 순위

-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 지역별 일반 1순위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노부모우선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대상 세대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일반공급의 경우 각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및 일반공급 제1,2순위자 중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순위 안에서는 납입인정 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에 관계없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07.7.31전 전입) 계속하여 당해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한 자가 우선함. 이 방식은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07.7.31 이후 전입자는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순위	신청자격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의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제외(단, 2순위로는 청약 가능). <b>허위 또는 착오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있는 자가 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 시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b>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1순위 단서 조항 참조)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 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전산 추첨함)

※ 동일순위 안에서는 납입인정 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에 관계없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함. 이 방식은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 안내**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신청자격은 청약접수 받는 은행에서는 확인하지 않음)
- 1. 청약저축 1순위자
-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기준)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3.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 노부모우선 공급의 경우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로 불.
- ※ 위의 "동일 순위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고, 낙첨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 포함됨.
- ※ 우선 공급 대상자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하여야 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증빙서류(※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참조)를 SH공사에 제출하여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7.30)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반공급 신청은 청약순위별로 구분하여 평면유형별,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개별 평면유형이 속한 ब्ल럭 및 전용면적별로 통합·단순화한 '주택형'에 따라 접수하고 평면유형은 청약자가 신청한 주택형내의 평면유형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결정함.
  -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무주택기간은 재산검색 결과에 의하여 확인함.
  - 순위별 접수 마감여부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에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단,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 시각은 변동될 수 있음.
- ▶ 3자녀 특별공급
- 3자녀 특별공급은 점수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신청자가 각 전용면적별·지역별 배정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날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단, 신청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해당 지역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상위 점수자가 하위 점수자 신청접수 해당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접수일에 따른 차별은 없음.
  - 신청접수일시 및 장소

점 수	신청접수일	접 수 장 소	접 수 시 간
70점 이상	'08. 8. 6(수)	SH공사 1층 (지하철 3호선 대청역 ⑩번 출구와 연결)	09:30~18:00
신청자격자 전원	'08. 8. 7(목)		

• 구비 서류

신청 시 구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신청서(접수 장소 비치 및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li> <li>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li> <li>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li> <li>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li> <li>※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구청, 동사무소 등 담당자에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되도록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람.</li> <li>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 포함)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li> <li>-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li> </ul> </li> <li>장애인등록증 사본1부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li> <li>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li>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li> <li>인감도장 (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li> <li>제3자 대리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청약 위임용)1통,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추가 제출</li> </ul> </li> </ul>	

▶ 기타 특별공급

- 신청접수일시 : '08.8.6(수) 09:30~18:00
- 접수 장소 : SH공사 1층(지하철 3호선 대청역 하차 ⑩번 출구)
- 구비 서류

신청 시 구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신청서(접수 장소에 비치)</li> <li>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 포함)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li> <li>-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li> </ul> </li> <li>무주택서약서(접수 장소에 비치)</li>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li> <li>인감도장(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li> <li>제3자 대리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청약 위임용) 1통,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추가 제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li> </ul>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혼잡방지 및 청약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능 자에 한하여 은행창구 접수를 병행함.[단, 3자녀 및 기타 특별공급은 SH공사 1층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함]
- 일반공급의 경우 각 순위자는 해당순위 신청 접수일에만 당해 청약순위자격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음. 단, 청약순위 내에서 청약혼잡방지를 위하여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또는 회차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신청접수하며, 납입인정금액 또는 회차별 신청일에 해당 주택형별 접수가 마감되지 않는 한 상위 납입인정금액 또는 회차 해당자가 하위 납입인정금액 또는 회차 해당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접수일에 따른 차별은 없으며 당해 주택형별에 접수된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결정함.

• 신청접수일시 및 장소

신청자격	거주구분	무주택 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회차)	접수일자 (토·공휴일 제외)	신청접수 장소 및 시간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공고일 현재	24회 이상	2008.8.11(월)	- 접수장소 • 인터넷 국민은행 청약저축가입자: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청약저축가입자: www.ap2you.com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공고일 현재	24회 이상	2008.8.12(화)	
1순위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5년 이상	600만원 이상	2008.8.13(수)	
		3년 이상	360만원 이상	2008.8.14(목)	
		공고일 현재	24회 이상	2008.8.18(월)	
2순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공고일 현재	6회 이상	2008.8.20(수)	
3순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공고일 현재	-	2008.8.21(목)	- 접수장소 : 국민은행 • 인터넷 : www.kbstar.com - 접수시간 • 08:30~18:00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무주택세대주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 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 포함)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청약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일반전화)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람]

※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창구 접수시간 09:30 ~ 16:30)

• 인터넷 신청접수 방법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청약서비스 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저축을 가입한 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저축을 가입한 자
이용 대상	공 통	-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자 - 3순위 : बैं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 자(단,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인터넷	-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이용 방법 및 절차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청약저축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며 계약체결 시에 제출 서류와 대조하여 신청 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세대원, 거주지, 무주택기간, 과거 5년내 당첨사실, 주민등록번호, 노부모부양 여부 및 조건 등)할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하오니 신문 공고나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대상자이며, 그 외 거주자는 수도권지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간 - 인터넷청약 시간은 오전8:30부터 오후6:00까지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신청완료 기준)하여야 함.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 계약시 서류제출 - 인터넷신청에 의해 당첨된 자는 '인터넷 신청접수자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계약체결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 지역 : 서울특별시 거주지역 기재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어야 하며 그 외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기재
  - 거주개시일 :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확인한 전입일을 기재
  - 무주택세대주 기간 : 무주택기간과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한 세대주인정기간을 감안하여 기재  
※ 세대주기간은 세대주가 아닌 기간을 차감한 전·후기간 등을 합산할 수 있으나 무주택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함.
  - 부양가족수 : 민영주택 가점항목 중 부양가족 인정기준과 동일하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하고 기재
-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한 청약 또는 청약자격 허위기재 등에 따른 당첨취소 및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SH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단, 신청 당일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취소 시 예외)
  -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증명서류를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과 동시에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 또는 재당첨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은 물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공급신청서에 인자된 내용과 신청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방문 신청시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배우자 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 신청서 (노부모부양우선공급 및 1,2순위자 : 청약저축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비치) - 청약저축 통장(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및 1,2순위에 한함) - 예금인장(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및 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서명 - 청약 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위임장 1통(위임장 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청약자 본인의 신분증 제출은 생략 가능)

▶ 3순위 청약

- 3순위 청약 신청금 : 전주택형 1,000만원
  -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가능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1.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8.9.8)이후 평일 09:30~16:30(단, 토·공휴일 제외)
  2. 환불장소 :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
  3.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서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 시 사용한 도장 또는 본인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4.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 제3자의 주민등록증
  5.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6.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7.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됨.

# 전용면적 85m<sup>2</sup>초과

■ 은평뉴타운 1지구(13개 블록) 1,567세대 중 258세대 및 2지구(3개 블록) 687세대 중 118세대

구분		계	전용101m <sup>2</sup>	전용134m <sup>2</sup>	전용167m <sup>2</sup>
합계		376	170	156	50
1지구	A공구	68	21	36	11
	B공구	123	43	52	28
	C공구	67	33	23	11
2지구 A공구		118	73	45	-

■ 1지구 A공구 1블록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7~15개층 11개동 분양아파트 159세대 중 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m <sup>2</sup> )						층당 대지면적 (m <sup>2</sup> )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 층수	입주 기한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3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민영주택	22011-01	2008770001(01)	136.2490	101A	확장형일반	101.610	34.639	136.249	70.190	(65.232)	206.439	81.177	6		6	814,816,817,819,820	8	'09.1.9
	22011-02	2008770001(02)	167.7170	134B	확장형일반	134.510	33.943	168.453	92.917	(86.353)	261.370	107.461	3		3	813	12	
				134F	확장형일반	134.260	33.457	167.717	92.745	(86.193)	260.462	107.261	7		7	813,816	9	
	22011-03	2008770001(03)	168.4530	134B	비확장일반	134.510	33.943	168.453	92.917	(86.353)	261.370	107.461	1		1	815	8	
				134F	비확장일반	134.260	33.457	167.717	92.745	(86.193)	260.462	107.261	6	1	5	815	12	
	22011-04	2008770001(04)	132.4780	북101-84A	펜트하우스	101.930	30.586	132.516	70.411	(65.437)	202.927	81.432	1		1	812	10	
	22011-05	2008770001(05)	169.2890	북134-101A	펜트하우스	134.970	39.626	174.596	93.235	(86.649)	267.831	107.828	1		1	820	9	
				북134-134F	펜트하우스	134.820	34.469	169.289	93.131	(86.552)	262.420	107.708	2		2	813,816	14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 (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민영주택	136.2490	101A	확장일반형	2	7~8	520,209	104,041	52,021	52,021	312,126
					3~6	510,214	102,042	51,021	51,021	306,130
					9	485,227	97,045	48,523	48,523	291,136
	167.7170	134B	확장일반형	2	7~12	684,618	136,923	68,462	68,462	410,771
					6	658,013	131,602	65,801	65,801	394,809
					2	681,626	136,325	68,163	68,163	408,975
		134F	확장일반형	4	3~6	668,381	133,676	66,838	66,838	401,029
					6	655,137	131,027	65,514	65,514	393,082
					8	641,892	128,378	64,189	64,189	385,136
	168.4530	134B	비확장일반	2	7~12	684,618	136,923	68,462	68,462	410,771
					2	681,626	136,325	68,163	68,163	408,975
					4	668,381	133,676	66,838	66,838	401,029
	132.4780	북101-84A	펜트하우스	2	9~11	641,892	128,378	64,189	64,189	385,136
					1	562,077	112,415	56,208	56,208	337,246
					2	795,937	159,187	79,594	79,594	477,562
	169.2890	북134-101A	펜트하우스	2	9	786,845	157,369	78,685	78,685	472,106
1					771,744	154,348	77,174	77,174	463,048	
2										

■ 1지구 A공구 2블록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6~15개층 9개동 분양아파트 124세대 중 2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m <sup>2</sup> )						층당 대지면적 (m <sup>2</sup> )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 층수	입주 기한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3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민영주택	22012-01	2008770002(01)	136.8380	101A	확장형일반	101.610	35.228	136.838	61.512	(55.383)	198.350	89.260	1		1	807	3	'09.1.9
				134A	확장형일반	134.960	40.197	175.157	81.702	(73.561)	256.859	118.557	4		4	802	12	
	22012-02	2008770002(02)	167.4440	C134A	확장형일반	134.890	32.554	167.444	81.660	(73.523)	249.104	118.496	4		4	801	7	
				C134A1	확장형일반	134.890	32.554	167.444	81.660	(73.523)	249.104	118.496	1		1	801	2	
				C134B	확장형일반	134.860	36.358	171.218	81.642	(73.507)	252.860	118.469	3		3	801	7	
	22012-03	2008770002(03)	213.7000	167A	비확장일반	167.690	46.010	213.700	101.516	(91.401)	315.216	147.309	7		7	803	13	
	22012-04	2008770002(04)	135.1090	C101B	비확장펜트	101.840	35.431	137.271	61.652	(55.509)	198.923	89.462	1		1	801	7	
	22012-05	2008770002(05)	133.1070	북101-84A	펜트하우스	101.930	31.177	133.107	61.706	(55.558)	194.813	89.541	2		2	805,806	7	
	22012-06	2008770002(06)	175.3790	북134-101A	펜트하우스	134.970	40.409	175.379	81.709	(73.567)	257.088	118.566	1		1	807	7	
	22012-07	2008770002(07)	212.8870	북167-134A	펜트하우스	167.620	46.757	214.377	101.474	(91.363)	315.851	147.248	2		2	802,804	14	
				북167-167A	펜트하우스	167.460	45.427	212.887	101.378	(91.276)	314.265	147.107	1		1	803	14	
	22012-08	2008770002(08)	213.9250	북167-C134A	비확장펜트	167.500	46.425	213.925	101.402	(91.298)	315.327	147.142	1		1	801	12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 (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민영주택	136.8380	101A	확장형일반	4	3~6	501,941	100,388	50,194	50,194	301,165
					7~13	687,191	137,438	68,719	68,719	412,315
					4	673,534	134,706	67,353	67,353	404,122
	167.4440	134A	확장형일반	7	1	646,216	129,243	64,622	64,622	387,729
					3	656,931	131,386	65,693	65,693	394,159
					4	643,874	128,774	64,387	64,387	386,326
		C134A1	확장형일반	5	2	630,817	126,163	63,082	63,082	378,490
					3	671,738	134,347	67,174	67,174	403,043
					4	658,386	131,677	65,839	65,839	395,031
	213.7000	167A	비확장일반	3	7~13	898,542	179,708	89,854	89,854	539,126
					4	880,893	176,178	88,089	88,089	528,537
					5	863,243	172,648	86,324	86,324	517,947
	135.1090	C101B	비확장펜트	3	7	513,644	102,728	51,364	51,364	308,188
	133.1070	북101-84A	펜트하우스	3	7	558,966	111,793	55,897	55,897	335,379
					4	547,908	109,581	54,791	54,791	328,745
	175.3790	북134-101A	펜트하우스	3	7	783,277	156,655	78,328	78,328	469,966
212.8870	북167-134A	펜트하우스	1	14	1,057,452	211,490	105,745	105,745	634,472	
				1	1,050,102	210,020	105,010	105,010	630,062	
213.9250	북167-C134A	비확장펜트	3	12	1,034,705	206,941	103,471	103,471	620,822	



■ 1지구 A공구 12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0~15개층 10개동 분양아파트 118세대 중 1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당 공급면적(㎡)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 층수	입주 기한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3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민영주택	22013-01	2008770003(01)	138.6060	101A1	확장형일반	101.610	37.284	138.894	52.585	(48.318)	191.479	85.572	5	1	4	825,826,828	13	'09.1.9
						101.760	36.846	138.606	52.662	(48.389)	191.268	85.698	5	5	826,827,828	13		
	22013-02	2008770003(02)	175.7050	복134-101A1	펜트하우스	134.970	44.287	179.257	69.849	(64.181)	249.106	113.666	3	3	825,826,827	14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 (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민영주택	138.6060	101A1	확장형일반	2	7~13	540,633	108,126	54,063	54,063	324,381
				3	3~6	529,960	105,992	52,996	52,996	317,976
		101B	확장형일반	2	7~13	539,511	107,902	53,951	53,951	323,707
				3	3~6	528,861	105,772	52,886	52,886	317,317
	175.7050	복134-101A1	펜트하우스	5	2	518,209	103,641	51,821	51,821	310,926
				1	14	846,183	169,236	84,618	84,618	507,711
				2	11	829,551	165,910	82,955	82,955	497,731

■ 1지구 A공구(1,2,12블럭)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면적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101A	101A1	101B	복101-84A	134A	134B	134F
금액	4,240	4,640	3,905	912	6,538	3,261	4,020
면적	19.08	20.88	17.57	8.10	34.33	17.13	21.11

구분	C134A	C134A1	C134B	복134-101A	복134-101A1	복134-134F	복167-134A	복167-167A
금액	3,026	3,026	5,260	2,031	2,037	1,497	1,810	1,324
면적	15.89	15.89	27.62	10.91	10.94	8.04	18.27	13.36

■ 1지구 B공구 3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8~15개층 3개동 분양아파트 63세대 중 2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당 공급면적(㎡)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 층수	입주 기한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3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민영주택	22014-01	2008770004(01)	178.2900	NC134A	확장형일반	134.910	44.760	179.670	78.081	(70.067)	257.751	106.546	2	2	708	7	'09.1.9		
						134.910	43.380	178.290	78.081	(70.067)	256.371	106.546	4	4	708	8			
	22014-02	2008770004(02)	179.6700	NC134A	비확장일반	134.910	44.760	179.670	78.081	(70.067)	257.751	106.546	2	2	708	5			
						167A	비확장일반	167.690	58.966	226.656	97.052	(87.091)	323.708	132.434	5	5		706	12
	22014-03	2008770004(03)	226.6560	복101-NC84B	복층형	101.980	49.986	151.966	59.022	(52.964)	210.987	80.539	1	1	708	3			
						복101-NC84D	펜트하우스	101.890	39.112	141.002	58.970	(52.918)	199.972	80.468	1	1		708	6
	22014-04	2008770004(04)	151.9660	복101-84A	펜트하우스	101.930	39.142	141.072	58.993	(52.938)	200.066	80.500	3	3	707	8			
						복101-84B	펜트하우스	101.870	39.467	141.337	58.958	(52.907)	200.295	80.452	1	1		707	6
						복101-84C	펜트하우스	101.460	38.828	140.288	58.721	(52.694)	199.009	80.129	1	1		707	8
						NC167A	펜트하우스	167.700	58.998	226.698	97.058	(87.097)	323.756	132.442	1	1		708	8
	22014-05	2008770004(05)	140.2880	복101-84A	펜트하우스	101.930	39.142	141.072	58.993	(52.938)	200.066	80.500	3	3	707	8			
	22014-06	2008770004(06)	222.9180	복101-84B	펜트하우스	101.870	39.467	141.337	58.958	(52.907)	200.295	80.452	1	1	707	6			
						복101-84C	펜트하우스	101.460	38.828	140.288	58.721	(52.694)	199.009	80.129	1	1		707	8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 (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2009.1.9)		
민영주택	178.2900	NC134A	확장형일반	2	7~8	693,547	138,709	69,355	69,355	416,128		
				3	3~6	679,837	135,967	67,984	67,984	407,902		
		NC134B	확장형일반	2	7~8	688,219	137,643	68,822	68,822	412,932		
				3	3~6	674,615	134,923	67,462	67,462	404,768		
	179.6700	NC134A	비확장일반	3	3~5	679,837	135,967	67,984	67,984	407,902		
				2	7~13	917,420	183,484	91,742	91,742	550,452		
	226.6560	167A	비확장일반	3	3~6	899,512	179,902	89,951	89,951	539,708		
				5	2	881,605	176,321	88,161	88,161	528,962		
				3	3	603,118	120,623	60,312	60,312	361,871		
	151.9660	복101-NC84B	복층형	3	3	559,604	111,920	55,960	55,960	335,764		
				복101-NC84D	펜트하우스	3	6	571,127	114,225	57,113	57,113	342,676
		140.2880	복101-84A	펜트하우스	2	8	559,882	111,976	55,988	55,988	335,930	
					3	6	560,935	112,187	56,094	56,094	336,560	
					복101-84B	펜트하우스	2	8	567,953	113,590	56,795	56,795
복101-84C					펜트하우스	2	8	567,953	113,590	56,795	56,795	340,773
222.9180	NC167A	펜트하우스	2	8	917,590	183,518	91,759	91,759	550,554			

■ 1지구 B공구 4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8~15개층 4개동 64세대 중 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당 공급면적(㎡)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 층수	입주 기한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3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민영주택	22015-01	2008770005(01)	179.6070	NC134A	확장형일반	134.910	46.077	180.987	88.397	(78.913)	269.384	113.094	3	3	702	7	'09.1.9	
						134.910	44.697	179.607	88.397	(78.913)	268.004	113.094	4	4	702	8		
	22015-02	2008770005(02)	180.9870	NC134A	비확장일반	134.910	46.077	180.987	88.397	(78.913)	269.384	113.094	2	2	702	4		
						167A	확장형일반	167.690	60.602	228.292	109.875	(98.087)	338.167	140.574	3	3		705
	22015-03	2008770005(03)	228.2920	복101-NC84B	복층형	101.980	50.981	152.961	66.820	(59.651)	219.781	85.489	1	1	702	6		
	22015-04	2008770005(04)	152.9610	복101-84A	펜트하우스	101.930	40.137	142.067	66.787	(59.622)	208.854	85.447	1	1	703	8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2008.10.6)	1차 중도금(2008.11.7)	2차 중도금(2008.12.8)	잔금(2009.1.9)
민영주택	179.6070	NC134A	확장형일반	2	7~8	699,892	139,978	69,989	69,989	419,936
				3	3~6	686,145	137,229	68,615	68,615	411,686
				6	702동 201호	665,523	133,104	66,552	66,552	399,315
		NC134B	확장형일반	2	7~8	694,556	138,911	69,456	69,456	416,733
				3	3~6	680,912	136,182	68,091	68,091	408,548
				5	2	667,270	133,454	66,727	66,727	400,362
	180.9870	NC134A	비확장일반	3	3~5	686,145	137,229	68,615	68,615	411,686
				7	1	658,650	131,730	65,865	65,865	395,190
	228.2920	167A	확장형일반	3	3~6	908,195	181,639	90,820	90,820	544,916
				7	1	872,290	174,458	87,229	87,229	523,374
152.9610	복101-NC84B	복층형	3	6	606,085	121,217	60,609	60,609	363,650	
140.1150	복101-84A	펜트하우스	2	8~9	574,135	114,827	57,414	57,414	344,480	

■ 1지구 B공구 10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7~11개층 4개동 57세대 중 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층당 공급대수(㎡)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기한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3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민영주택	22016-01	2008770006(01)	173.8150	134A	확장형일반	134A	134.960	44.225	179.185	68.682	(55.335)	247.866	129.24	4		4	710,711	7	'09.1.9
						134C	134.960	38.855	173.815	68.682	(55.335)	242.496	129.24	3		3	711	9	
	22016-02	2008770006(02)	135.4780	복101-84A	펜트하우스	복101-84A	101.930	34.310	136.240	51.873	(41.793)	188.112	97.61	1		1	712	7	
						복101-84C	101.460	34.018	135.478	51.633	(41.600)	187.111	97.16	1		1	712	6	
	22016-03	2008770006(03)	179.4470	복134-101A	펜트하우스	복134-101A	134.970	44.477	179.447	68.687	(55.340)	248.133	129.25	1		1	711	7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2008.10.6)	1차 중도금(2008.11.7)	2차 중도금(2008.12.8)	잔금(2009.1.9)
민영주택	173.8150	134A	확장형일반	2	7~9	720,768	144,153	72,077	72,077	432,461
				3	3~6	706,186	141,237	70,619	70,619	423,711
				5	2	691,603	138,320	69,160	69,160	414,963
		134C	확장형일반	2	7~9	699,167	139,833	69,917	69,917	419,500
				6	711동 203호	663,802	132,760	66,380	66,380	398,282
				8	711동 103호	649,656	129,931	64,966	64,966	389,793
	135.4780	복101-84A	펜트하우스	2	7	580,054	116,010	58,005	58,005	348,034
				복101-84C	펜트하우스	3	6	565,188	113,037	56,519
	179.4470	복134-101A	펜트하우스	2	7	813,763	162,752	81,376	81,376	488,259

■ 1지구 B공구 11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8~15개층 6개동 44세대 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층당 공급대수(㎡)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기한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3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민영주택	22017-01	2008770007(01)	136.1460	101A1	확장형일반	101.610	34.536	136.146	62.588	(56.116)	198.734	91.790	6		6	716,717,718	12	'09.1.9
	22017-02	2008770007(02)	131.4150	복101-84K	펜트하우스	101.820	29.595	131.415	62.717	(56.232)	194.131	91.980	1		1	717	13	
	22017-03	2008770007(03)	175.6500	복134-101A1	펜트하우스	134.970	40.680	175.650	83.136	(74.539)	258.786	121.920	2		2	717,718	13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2008.10.6)	1차 중도금(2008.11.7)	2차 중도금(2008.12.8)	잔금(2009.1.9)
민영주택	136.1460	101A1	확장형일반	2	7~13	521,588	104,317	52,159	52,159	312,953
				3	3~6	511,383	102,276	51,138	51,138	306,831
	131.4150	복101-84K	펜트하우스	2	13	564,425	112,885	56,443	56,443	338,654
	175.6500	복134-101A1	펜트하우스	2	13	795,640	159,128	79,564	79,564	477,384

■ 1지구 B공구 13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9~15개층 11개동 270세대 중 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층당 공급대수(㎡)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기한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3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민영주택	22018-01	2008770008(01)	126.2440	NM101D	확장형일반	101.940	25.705	127.645	51.005	(47.696)	178.650	91.300	3		3	721	8	'09.1.9	
						NM101E	101.820	24.424	126.244	50.944	(47.639)	177.188	91.190	2		2	721		7
						NM134A	134.960	38.788	173.748	67.525	(63.145)	241.273	120.870	8	1	7	719,723		13
	22018-02	2008770008(02)	165.9490	NM134D	확장형일반	134.910	31.039	165.949	67.501	(63.122)	233.450	120.830	4		4	724,727,728	9		
						NM134E	134.750	30.941	165.691	67.421	(63.047)	233.112	120.690	3		3	724,725		10
	22018-03	2008770008(03)	127.6450	NM101D	비확장일반	101.940	25.705	127.645	51.005	(47.696)	178.650	91.300	4	1	3	729	9		
						NM101E	101.820	24.424	126.244	50.944	(47.639)	177.188	91.190	4		4	729		8
	22018-04	2008770008(04)	165.6910	NM134E	비확장일반	134.750	30.941	165.691	67.421	(63.047)	233.112	120.690	4		4	726	9		
	22018-05	2008770008(05)	210.3060	복167-NM134E	펜트하우스	167.070	43.561	210.631	83.592	(78.169)	294.223	149.630	2		2	726	12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2008.10.6)	1차 중도금(2008.11.7)	2차 중도금(2008.12.8)	잔금(2009.1.9)
민영주택	126.2440	NM101D	확장형일반	2	7~8	495,397	99,079	49,540	49,540	297,238
				3	3~6	485,535	97,107	48,554	48,554	291,320
		NM101E	확장형일반	2	7~8	489,960	97,992	48,996	48,996	293,976
				4	2	470,452	94,090	47,045	47,045	282,272
	165.9490	NM134A	확장형일반	2	7~13	693,999	138,799	69,400	69,400	416,400
				3	3~6	680,058	136,011	68,006	68,006	408,035
		NM134D	확장형일반	2	7~10	662,847	132,569	66,285	66,285	397,708
				3	3~6	649,532	129,906	64,953	64,953	389,720
		NM134E	확장형일반	2	7~10	661,816	132,363	66,182	66,182	397,089
				3	3~6	648,521	129,704	64,852	64,852	389,113
	127.6450	NM101D	비확장일반	2	7~9	495,397	99,079	49,540	49,540	297,238
				3	3~6	485,535	97,107	48,554	48,554	291,320
	165.6910	NM101E	비확장일반	2	7~9	489,960	97,992	48,996	48,996	293,976
				4	2	470,452	94,090	47,045	47,045	282,272
210.3060	NM134E	비확장일반	2	7~11	661,816	132,363	66,182	66,182	397,089	
			3	3~6	648,521	129,704	64,852	64,852	389,113	
210.3060	복167-NM134E	펜트하우스	2	10~12	1,034,748	206,949	103,475	103,475	620,849	

■ 1지구 B공구 14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7~15개층 13개동 284세대 중 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당 대지적(㎡)	공급세대수			해당 평면 최고 층수	입주 기한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3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공용	주거공용	계	공용	주거공용	계			공용				주거공용	계	
민영주택	22019-01	2008770009(01)	125.5530	NM101D	확장형일반	101.940	25.014	126.954	53.960	(50.274)	180.914	93.090	5	1	4	730,738	8
						101.820	23.733	125.553	53.897	(50.215)	179.450	92.980	2		2	730	4
	22019-02	2008770009(02)	172.8330	NM134A	확장형일반	134.960	37.873	172.833	71.439	(66.559)	244.272	123.250	1		1	741	5
						167.690	43.122	210.812	88.765	(82.701)	299.577	153.140	13	2	11	733,734,735	13
	22019-03	2008770009(03)	210.8120	NM167A	확장형일반	101.820	23.733	125.553	53.897	(50.215)	179.450	92.980	5		5	736,739	6
						134.910	30.124	165.034	71.413	(66.534)	236.447	123.200	2		2	732	7
	22019-04	2008770009(04)	126.9540	NM101E	비확장일반	134.750	30.027	164.777	71.328	(66.455)	236.105	123.060	3		3	731,732	8
						167.620	43.870	211.490	88.728	(82.666)	300.218	153.070	2		2	740	6
	22019-05	2008770009(05)	164.7770	NM134D	비확장일반	167.270	41.901	209.171	88.543	(82.494)	297.714	152.750	1		1	731	10
						167.270	41.901	209.171	88.543	(82.494)	297.714	152.750	1		1	731	10
	22019-06	2008770009(06)	209.1710	복167-NM134A	펜트하우스	167.460	42.543	210.003	88.643	(82.587)	298.646	152.930	1		1	733	14
						167.460	42.543	210.003	88.643	(82.587)	298.646	152.930	1		1	733	14
	22019-07	2008770009(07)	210.0030	복167-NM167A	펜트하우스	167.460	42.543	210.003	88.643	(82.587)	298.646	152.930	1		1	733	14
						167.460	42.543	210.003	88.643	(82.587)	298.646	152.930	1		1	733	14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2008.10.6)	1차 중도금(2008.11.7)	2차 중도금(2008.12.8)	잔금(2009.1.9)
민영주택	125.5530	NM101D	확장형일반	2	7~9	484,190	96,838	48,419	48,419	290,514
				3	3~6	474,554	94,910	47,455	47,455	284,734
		NM101E	확장형일반	4	2	464,918	92,983	46,492	46,492	278,951
				3	3~6	469,317	93,863	46,932	46,932	281,590
	172.8330	NM134A	확장형일반	3	3~5	671,167	134,233	67,117	67,117	402,700
				2	7~13	868,870	173,774	86,887	86,887	521,322
	210.8120	NM167A	확장형일반	3	3~6	851,626	170,325	85,163	85,163	510,975
				4	2	834,384	166,876	83,438	83,438	500,632
	126.9540	NM101E	비확장일반	3	3~6	469,317	93,863	46,932	46,932	281,590
				5	1	450,257	90,051	45,026	45,026	270,154
	164.7770	NM134D	비확장일반	2	7~10	654,017	130,803	65,402	65,402	392,410
				3	3~6	640,881	128,176	64,088	64,088	384,529
		NM134E	비확장일반	2	7~10	652,997	130,599	65,300	65,300	391,798
				3	3~6	639,882	127,976	63,988	63,988	383,930
209.1710	복167-NM134A	펜트하우스	3	6	1,003,986	200,797	100,399	100,399	602,391	
			복167-NM134D	펜트하우스	2	10~11	1,013,286	202,657	101,329	101,329
210.0030	복167-NM167A	펜트하우스	1	14	1,037,706	207,541	103,771	103,771	622,623	

■ 1지구 B공구(3,4,10,11,13,14블럭)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면적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101A1	NM101D	NM101E	134A	134C	NC134A	NC134B	NM134A	NM134D	NM134E
금액	4,622	3,309	3,760	6,539	3,889	4,087	2,586	6,539	3,725	3,479
면적	20.80	14.89	16.92	34.34	20.42	21.46	13.58	34.34	19.56	18.27

구분	167A	NC167A	NM167A	복101-84A	복101-84B	복101-84C	복101-84K	복101-NC84B	복101-NC84D	복134-101A	복134-101A1	복167-NM134A	복167-NM134D	복167-NM134E	복167-NM167A
금액	4,535	4,615	4,535	924	1,729	1,337	362	1,284	1,958	2,031	2,031	2,555	1,572	1,870	527
면적	21.16	21.53	21.16	8.20	15.35	11.87	3.21	11.40	17.38	10.91	10.91	25.79	15.87	18.88	5.32

■ 1지구 C공구 5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6~15개층 8개동 123세대 중 2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당 대지적(㎡)	공급세대수			해당 평면 최고 층수	입주 기한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3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공용	주거공용	계	공용	주거공용	계			공용				주거공용	계	
민영주택	22020-01	2008770010(01)	132.4120	101A	확장형일반	101.610	30.802	132.412	74.367	(67.294)	206.779	92.619	4		4	623	6
						134A	확장형일반	134.960	39.158	174.118	98.776	(89.382)	272.894	123.019	11	1	10
	22020-02	2008770010(02)	168.0270	C134A	확장형일반	134.950	37.076	172.026	98.769	(89.375)	270.795	123.010	2		2	629	9
						167A	확장형일반	167.690	48.110	215.800	122.731	(111.058)	338.531	152.853	6		6
	22020-03	2008770010(03)	215.8000	복101-84B	펜트하우스	101.870	31.600	133.470	74.558	(67.467)	208.028	92.856	2		2	624,625	7
						134-101A	펜트하우스	134.970	40.770	175.740	98.783	(89.388)	274.523	123.028	1		1
	22020-04	2008770010(04)	131.7470	복134-101A	펜트하우스	167.620	46.537	214.157	122.680	(111.012)	336.837	152.789	2		2	626	14
						167.620	46.537	214.157	122.680	(111.012)	336.837	152.789	2		2	626	14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2008.10.6)	1차 중도금(2008.11.7)	2차 중도금(2008.12.8)	잔금(2009.1.9)
민영주택	132.4120	101A	확장형일반	3	3~6	500,898	100,179	50,090	50,090	300,539
	168.0270	134A	확장형일반	2	7~13	689,029	137,805	68,903	68,903	413,418
				3	3~6	675,649	135,129	67,565	67,565	405,390
		7	1	648,889	129,777	64,889	64,889	389,334		
		2	7~11	680,750	136,150	68,075	68,075	408,450		
	215.8000	167A	확장형일반	3	3~6	667,531	133,506	66,753	66,753	400,519
				2	7~13	909,711	181,942	90,971	90,971	545,827
				3	3~6	892,297	178,459	89,230	89,230	535,378
				5	2	874,882	174,976	87,488	87,488	524,930
				8	627동 101호	848,763	169,752	84,876	84,876	509,259
	131.7470	복101-84B	펜트하우스	2	7	566,399	113,279	56,640	56,640	339,840
				3	5	555,462	111,092	55,546	55,546	333,278
	175.7400	복134-101A	펜트하우스	2	7	789,048	157,809	78,905	78,905	473,429
	212.6280	복167-134A	펜트하우스	1	14	1,064,619	212,923	106,462	106,462	638,772

■ 1지구 C공구 6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0~15개층 7개동 78세대 중 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m <sup>2</sup> )					세대당 공급대수(㎡)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기한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3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민영주택	22021-01	2008770011(01)	134.9630	101A	확장형일반	101.610	33.353	134.963	63.962	(58.375)	198.925	78.968	5		5	616,618,619	11	'09.1.9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2008.10.6)	1차 중도금(2008.11.7)	2차 중도금(2008.12.8)	잔금(2009.1.9)
민영주택	134.9630	101A	확장형일반	2	7~13	497,417	99,483	49,742	49,742	298,450
				3	3~6	487,761	97,552	48,776	48,776	292,657

■ 1지구 C공구 7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 1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9~15개층 9개동 123세대 중 19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m <sup>2</sup> )					세대당 공급대수(㎡)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기한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3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민영주택	22022-01	2008770012(01)	130.0640	101A1	확장형일반	101.610	35.651	137.261	55.642	(50.434)	192.903	92.955	12	1	11	606,610,611,612	13	'09.1.9
	22022-02	2008770012(02)	169.7480	134D	확장형일반	134.700	35.048	169.748	73.762	(66.858)	243.510	123.226	1		1	607	5	
	22022-03	2008770012(03)	132.0920	101D	비확장일반	101.970	30.122	132.092	55.839	(50.613)	187.931	93.284	2		2	609	5	
	22022-04	2008770012(04)	169.748N	134D	비확장일반	134.700	35.048	169.748	73.762	(66.858)	243.510	123.226	1		1	609	7	
	22022-05	2008770012(05)	213.6130	복167-134D	펜트하우스	167.470	46.143	213.613	91.707	(83.124)	305.320	153.205	3		3	607,608,609	8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2008.10.6)	1차 중도금(2008.11.7)	2차 중도금(2008.12.8)	잔금(2009.1.9)
민영주택	130.0640	101A1	확장형일반	2	7~13	521,554	104,310	52,155	52,155	312,934
				3	3~6	511,285	102,257	51,129	51,129	306,770
	169.7480	134D	확장형일반	3	4~6	679,927	135,985	67,993	67,993	407,956
				3	3~6	492,031	98,406	49,203	49,203	295,219
	132.0920	101D	비확장일반	5	1	472,267	94,453	47,227	47,227	283,360
				2	7	693,724	138,744	69,372	69,372	416,236
	169.748N	134D	비확장일반	2	7	693,724	138,744	69,372	69,372	416,236
213.6130	복167-134D	펜트하우스	2	7~8	1,069,221	213,844	106,922	106,922	641,533	

■ 1지구 C공구 8블럭 공급내역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9~13층 5개동 60세대 중 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m <sup>2</sup> )					세대당 공급대수(㎡)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기한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3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민영주택	22023-01	2008770013(01)	129.8250	101A1	확장형일반	101.610	35.412	137.022	55.304	(47.746)	192.326	100.690	3		3	605	10	
				101C	확장형일반	101.780	28.045	129.825	55.397	(47.826)	185.222	100.859	2		2	605	9	
				101D	확장형일반	101.970	29.882	131.852	55.500	(47.915)	187.352	101.047	3		3	604	5	
	22023-02	2008770013(02)	169.4310	134D	확장형일반	134.700	34.731	169.431	73.314	(63.295)	242.745	133.481	3		3	604	5	
				134E	확장형일반	134.700	35.471	170.171	73.314	(63.295)	243.485	133.481	1		1	603	2	
	22023-03	2008770013(03)	170.1710	134D	비확장일반	134.700	34.731	169.431	73.314	(63.295)	242.745	133.481	1		1	602	4	
				134E	비확장일반	134.700	35.471	170.171	73.314	(63.295)	243.485	133.481	1		1	602	3	
	22023-04	2008770013(04)	173.8550	복134-101C	펜트하우스	134.820	42.184	177.004	73.379	(63.351)	250.383	133.600	1		1	605	12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2008.10.6)	1차 중도금(2008.11.7)	2차 중도금(2008.12.8)	잔금(2009.1.9)
민영주택	129.8250	101A1	확장형일반	2	7~11	521,202	104,240	52,120	52,120	312,722
				3	3~6	510,885	102,177	51,089	51,089	306,530
				2	7~11	493,826	98,765	49,383	49,383	296,295
	169.4310	134D	확장형일반	3	3~5	491,609	98,321	49,161	49,161	294,966
				3	3~5	676,451	135,290	67,645	67,645	405,871
	170.1710	134E	확장형일반	4	2	665,549	133,109	66,555	66,555	399,330
				3	3~6	676,451	135,290	67,645	67,645	405,871
				3	3~6	679,406	135,881	67,941	67,941	407,643
173.8550	복134-101C	펜트하우스	1	12	810,197	162,039	81,020	81,020	486,118	

■ 1지구 C공구(5,6,7,8블럭) 발코니 확장금액 및 면적 내역

(단위: 천원, m<sup>2</sup>)

구분	101A	101A1	101C	101D	134A	134D	134E	C134A	167A	복101-84B	복134-101A	복134-101C	복167-134A	복167-134D
금액	4,231	4,631	3,338	4,122	6,564	4,031	4,685	5,509	4,538	1,729	2,033	683	2,463	414
면적	19.04	20.84	15.02	18.55	34.47	21.17	24.60	28.93	21.17	15.35	10.92	3.67	24.86	4.18

■ 2지구 A공구 1블럭 공급내역

-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2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아파트 9~15층 12개동 606세대 중 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m <sup>2</sup> )						휴일당 대지 면적(m <sup>2</sup> )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예정월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3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민영주택	22024-01	2008770014(01)	133.2460	101A	확장형일반	101.760	31.486	133.246	53.467	(51.003)	186.713	78.559	5		5	121,124,129	1	'09.02
				101B	확장형일반	101.830	32.423	134.253	53.505	(51.038)	187.758	78.613	2		2	122,124	1	
	22024-02	2008770014(02)	134.2530	101A	비확장일반	101.760	31.486	133.246	53.467	(51.003)	186.713	78.559	30	1	29	123	12	
				101B	비확장일반	101.830	32.423	134.253	53.505	(51.038)	187.758	78.613	8		8	123	9	
	22024-03	2008770014(03)	175.4640	134A	확장형일반	134.840	40.624	175.464	70.848	(67.582)	246.312	104.097	14		14	122	12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 (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입주시)
민영주택	133.2460	101A	확장형일반	5	1(121동 108호, 124동 103호 제외)	491,038	98,207	49,104	49,104	294,623
				6	121동 108호, 124동 103호	485,917	97,183	48,592	48,592	291,550
		101B	확장형일반	5	1	494,748	98,949	49,475	49,475	296,849
	134.2530	101A	비확장일반	1	12	531,995	106,399	53,200	53,200	319,196
				2	7~11	521,756	104,351	52,176	52,176	313,053
				3	3~6	511,516	102,303	51,152	51,152	306,909
				4	2	501,276	100,255	50,128	50,128	300,765
				5	1	491,038	98,207	49,104	49,104	294,623
				2	7~11	525,699	105,139	52,570	52,570	315,420
	175.4640	134A	확장형일반	3	3~6	515,382	103,076	51,538	51,538	309,230
				5	1	494,748	98,949	49,475	49,475	296,849
				1	12	744,674	148,934	74,467	74,467	446,806
				2	7~11	730,289	146,057	73,029	73,029	438,174
				3	3~6	715,904	143,180	71,590	71,590	429,544
				5	122동 102호	687,133	137,426	68,713	68,713	412,281
				6	122동 101호	679,940	135,988	67,994	67,994	407,964

■ 2지구 A공구 12블럭 공급내역

-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2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아파트 6~20층 6개동 303세대 중 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m <sup>2</sup> )						휴일당 대지 면적(m <sup>2</sup> )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예정월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3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민영주택	22025-01	2008770015(01)	176.2990	134A	확장형일반	134.840	41.459	176.299	77.240	(73.440)	253.539	99.583	10		10	107	10	'09.02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 (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입주시)
민영주택	176.2990	134A	확장형일반	2	7~14	720,976	144,195	72,098	72,098	432,585
				3	3~6	706,865	141,373	70,687	70,687	424,118
				4	2	692,753	138,550	69,275	69,275	415,653
				6	1	671,587	134,317	67,159	67,159	402,952

■ 2지구 A공구 13블럭 공급내역

-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뉴타운2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아파트 14~15층 4개동 162세대 중 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평면 유형	평면 형태	세대별 주택면적(m <sup>2</sup> )						휴일당 대지 면적(m <sup>2</sup> )	공급세대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층수	입주 예정월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3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주거공용	계										
민영주택	22026-01	2008770016(01)	126.607B	101A	확장형일반	101.760	24.847	126.607	57.767	(52.928)	184.374	86.757	4		4	113,115	1	'09.01
	22026-02	2008770016(02)	126.6070	101A	비확장일반	101.760	24.847	126.607	57.767	(52.928)	184.374	86.757	24		24	114	14	
	22026-03	2008770016(03)	166.6670	134A	확장형일반	134.840	31.827	166.667	76.547	(70.134)	243.214	114.960	20	2	18	112	15	
	22026-04	2008770016(04)	170.5200	복134B	비확장펜트	134.590	35.930	170.520	76.405	(70.004)	246.925	114.747	1		1	114	13	

- 분양가격

(단위:천원)

구분	주택형	평면유형	평면형태	구분 (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 (2008.10.6)	1차 중도금 (2008.11.7)	2차 중도금 (2008.12.8)	잔금 (입주시)
민영주택	126.607B	101A	확장형일반	6	1(115동 101호, 104호 제외)	476,439	95,287	47,644	47,644	285,864
				7	1(113동 101호, 102호 제외)	471,450	94,290	47,145	47,145	282,870
	126.6070	101A	비확장일반	2	7~14	506,381	101,276	50,638	50,638	303,829
				3	3~6	496,401	99,280	49,640	49,640	297,841
				5	2	481,430	96,286	48,143	48,143	288,858
				7	1	471,450	94,290	47,145	47,145	282,870
				1	15	722,043	144,408	72,204	72,204	433,227
	166.6670	134A	확장형일반	2	7~14	708,036	141,607	70,804	70,804	424,821
				3	3~6(112동 301호, 302호 제외)	694,029	138,805	69,403	69,403	416,418
				4	112동 301호, 302호	687,024	137,404	68,702	68,702	412,216
				5	2	673,016	134,603	67,302	67,302	403,809
				7	1	659,009	131,801	65,901	65,901	395,406
	170.5200	복134B	비확장펜트	2	13	814,368	162,873	81,437	81,437	488,621



■ 2지구 A공구(1,12,13블럭) 발코니 확장금액 및 면적 내역

(단위 : 천원, m<sup>2</sup>)

구 분	101A	101B	134A
금 액	6,298	4,992	8,828
면 적	16.88	13.38	20.65

- 금회 공급 물량은 은평뉴타운 2차 분양분으로서 1차 일반분양 또는 이주대책용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남은 잔여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실시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설공정이 80%를 초과하여 마이너스입찰을 실시할 수 없으며, 청약시 발코니 확장형 또는 비확장형을 선택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의한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은 우리공사(1층)에서 직접 접수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함.  
[※ 구체적인 공급세대수는 하단 '3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참조]
- 발코니 확장금액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옵션품목)의 금액으로서 전용면적85㎡초과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각 신청자격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됨.
- 금회 공급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및 각 평면유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 분양가격은 각 세대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를 일반동 층고만큼을 1개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고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하였음.
- 분양대상 표에서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평면유형의 최상층 층고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의 면적임.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방식이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계단실형 및 복도식의 세대조합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되돌려 드림)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신청자격

아래 신청자격 중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본인)와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를 말함.  
 ※ 2007.12.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7.30)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3자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민법상 만20세 미만('88.7.31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지역(1년 이상 계속 거주) 및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지역 1년 미만 거주,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해당 공급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 청약예금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동일 순위 경쟁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7.30)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07.7.31전 전입) 계속 거주한 자가 청약가점 등에 관계없이 우선하게 됨[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07.7.31 거주자부터 해당함)로 간주됨]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http://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입주자 모집공고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최근 당첨사실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자는 본인 및 세대원(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이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주택조합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입주자 선정방법 및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3자녀 특별공급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청약통장으로 일반공급 주택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3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함.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한 중복 청약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은 청약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중복 청약 및 당첨이 가능하나, 먼저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주택일 경우 먼저 당첨된 주택만 계약 가능
- 일반공급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 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 청약 불가(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 동일세대(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하여 계약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한 중복 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동일세대(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하여 계약(중복 당첨되기 전에 먼저 당첨된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으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계약)

▶ 입주자 선정 방법(공통)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특별 및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급은 입주자선정 순위별로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구분 없이 입주자를 선정함.</li> <li>- 주택의 동호는 평면유형별,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에 따라 일반공급 신청자는 국민은행,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는 SH공사 컴퓨터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함.</li> <li>-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이상(총30% 이내)을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3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 추첨 후 계약 체결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이 경우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li> <li>-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SH공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함.</li> <li>- 3자녀 특별공급 신청 미달분은 주택형별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3자녀 특별공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3자녀 특별공급 부적격처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li> </ul>

▶ 3자녀 특별공급

- 입주자 선정 방법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금회 공급량의 3% 이내에서 배정된 주택형의 물량에 한하여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금회 공급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전용면적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불력 및 동·호수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부적격 처리된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전용면적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  
(아래표 및 블럭별 분양대상 참조)
- 공급세대수

구 분	전용면적	계	101㎡	134㎡	167㎡
서울특별시 거주자		7	3	3	1
경기도 거주자		5	2	2	1
인천광역시 거주자		0	-	-	-
계		12	5	5	2

▶ 3자녀 특별공급시 배점기준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자녀 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인천·경기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일반공급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순위
  -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한 경우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 전에 예치하고 청약 가능함. (단,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가 주소지 변경 없이 해당 주소지역 청약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증액 없이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 시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2007.7.31전 전입) 계속하여 당해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한 자가 청약가점 등에 관계없이 우선하게 됨.(07.7.31이 후 전입자는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해당하지 아니함)
  - 금회 일반공급 물량 중 50%는 가점제,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함.

구분	순위	순 위 요 건
민영주택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자</li> <li>•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자</li> <li>※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하여야 됨.</li> <li>※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시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 수에 대하여 감점이 적용됨.</li> <li>•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li> <li>•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평형 변경한 경우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li> <li>•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li> <li>※1순위 청약제한 대상 : 청약예금에 가입한 1순위자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순위 청약 불가(2순위로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 전원)</li> <li>-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 전원)※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 사항' 참조</li> <li>- 2002.9.5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9.5가입자 포함) (만2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세대주로 보지 아니하며, 2007.12.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에 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li> </ul> </li> </ul>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li> <li>•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li> <li>•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자</li> <li>•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li> </ul>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단위:만원)

전용면적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01㎡		600	400	300
134㎡		1,000	700	400
167㎡		1,500	1,000	500

• 청약통장 면적변경 및 청약신청 요건

- 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을 지역별 전용면적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면적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면적 변경한 자의 청약신청 요건
  -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청약신청 가능.
  -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경우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청약신청 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청약신청 가능)

· 청약자측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함)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다만, 2007.9.1 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봄.**
-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을 말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산정

• 청약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가. 일반기준

- 1)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
- 2)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

나.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①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비 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3항, 제12조 제3항·제5항·제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천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다. 감점 산정기준

구 분	감 점 항 목		감 점 점 수
	기 준	소 유 주 택 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

■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8.7.30)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반공급 신청은 청약순위별로 구분하여 평면유형별,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개별 평면유형이 속한 블럭 및 전용면적별로 통합·단순화한 '주택형'에 따라 접수하고 평면유형은 청약자가 신청한 주택형내의 평면유형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결정함.
- 세대주 및 부양가족수는 주민등록등·초본(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무주택기간은 재산검색 결과에 의하여 확인함.
- 순위별 접수 마감여부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에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단,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각은 변동될 수 있음.

▶ 3자녀 특별공급

- 3자녀 특별공급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신청자가 각 전용면적별 배정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날에는 받지 않음. 단, 신청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해당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상위 점수자가 하위 점수자 신청접수 해당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접수일에 따른 차별은 없음.

• 신청접수일시 및 장소

점 수	신 청 접 수 일	접 수 장 소	접 수 시 간
70점 이상	'08. 8. 6(수)	SH공사 1층	09:30~18:00
신청자적자 전원	'08. 8. 7(목)	(지하철 3호선 대청역 ⑧번 출구와 연결)	

• 구비 서류

신청 시 구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신청서(접수 장소에 비치 및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li> <li>•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li> <li>•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li> <li>•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구청, 동사무소 등 담당자에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li> <li>•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 포함)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li> <li>-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li> </ul> </li> <li>•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li> <li>• 무주택서약서(접수 장소에 비치)</li>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li> <li>• 인감도장(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li> <li>• 제3자 대리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청약 위임용) 1통,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추가 제출</li> </ul> </li> </ul>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혼잡방지 및 청약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능 자에 한하여 은행창구 접수를 병행함.[단, 3자녀 특별공급은 SH 공사 1층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함.]
- 일반공급 1순위자의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신청 접수 해당일에,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신청접수 해당일에 각각 교차 신청할 수 없고, 각 순위자는 해당순위 신청 접수일에만 당해 청약순위자격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
- 신청접수일시 및 장소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토·공휴일 제외)	신청접수 장소 및 시간
1순위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	2008.8.11(월)~12(화)	- 접수장소 • 인터넷 국민은행 청약예금가입자 : www.kbstar.com 국민은행외 청약예금가입자 : www.ap2you.com  - 접수시간 • 08:30~18:00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08.8.13(수)	
2순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08.8.14(목)	
3순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08.8.18(월)	

-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무주택세대주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 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 포함)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청약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일반전화)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람]
- ※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도 청약이 가능함.(창구 접수기간 09:30 ~ 16:30)

• 인터넷 신청 접수 방법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예금을 가입한 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예금을 가입한 자
이용 대상	공 통	-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자 - 3순위 : बैं킹계좌에 3순위 청약 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 자(단,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인터넷	- 청약예금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신청한 경우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청약예금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며 계약 체결시에 제출서류와 대조하여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세대원, 거주지, 무주택기간, 과거 5년 내 당첨사실, 주민등록번호, 노부 모부양 여부 및 조건 등)할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신문 공고나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서울특별시 거주한 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대상자이며, 그 외 거주자는 수도권지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시간 - 인터넷청약 시간은 오전 8:30부터 오후 6:00까지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신청완료 기준)하여야 함.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 계약 시 서류제출 - 인터넷신청에 의해 당첨된 자는 '인터넷 신청접수자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계약 체결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 지역 : 서울특별시 거주지역 기재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어야 하며 그 외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기재
  - 거주개시일 :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확인한 전입일을 기재
  - 무주택 기간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참조
  - 부양가족수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참조
  - 청약통장가입기간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 자동으로 부여하므로 기재 생략
- 유의 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한 청약 또는 청약자격 허위기재 등에 따른 당첨취소 및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SH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단, 신청 당일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취소 시 예외)
  -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증명서류를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과 동시에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 또는 재당첨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은 물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공급신청서에 인자된 내용과 신청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람.

• 창구방문 신청시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배우자 포함) 신청 시	- 주택공급 신청서(1,2순위자 : 청약예금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본 · 지점에 비치) - 청약예금 통장(1,2순위에 한함) - 예금인장(1.2 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서명 - 청약 신청금 (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지참)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위임장 1통 (위임장 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청약자 본인의 신분증 제출은 생략 가능,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지참)

▶ 3순위 청약

- 3순위 청약 신청금 : 전주택형 1,000만원
  -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가능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 신청금 환불
  1.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8.9.8)이후 평일 09:30~16:30(단, 토 · 공휴일 제외)
  2. 환불장소 :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
  3.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서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 시 사용한 도장 또는 본인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4.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5.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6.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나,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7.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됨.

## 공통사항 (전용85m<sup>2</sup> 이하 및 초과)

■ 당첨자 발표

발표일 및 발표장소	당첨자 조회방법	비 고
<b>■ 3자녀 특별공급</b> - 일시 : 2008.8.11(월) (17:00) - 장소 : SH공사 홈페이지 및 분양팀 게시판	www.i-sh.co.kr → 좌측 하단 '당첨자 조회'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당첨자 명단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본인 확인 곤란 및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b>■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b> - 일시 : 2008.9.5(금) - 장소 · SH공사 홈페이지 및 분양팀 게시판 · 문화일보에 게재(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신문에 게시하지 않음)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이용기간 : 2008.9.5 ~ 2008.9.14 (10일간)	•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i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 2008.9.5 ~ 2008.9.14 (10일간)
	이용방법 :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 ☎ 1588-9999 (서비스번호 : 701) 이용기간 : 2008.9.5 ~ 2008.9.14 (10일간)	• ☎ 1369 (서비스코드 : 5#) • 2008.9.5 ~ 2008.9.14 (10일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대 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 2008.9.5 (08:30) ※ 제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계약 체결(일반공급, 3자녀 및 기타 특별공급)

▶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대상자	계약체결기간 (토·공휴일 제외)	계약시간	계약장소
1지구(1~8,10~14블럭) 및 2지구 1,12,13블럭 당첨자	2008.9.29(월) ~ 10.6(월)	09:30 ~ 17:00	SH공사 1층 분양팀 (지하철 3호선 대청역 하차 ⑧번 출구와 연결, SH공사빌딩 1층)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 당첨자는 계약체결 방문시 반드시 과거 당첨 사실(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및 주택소유 현황(공사 홈페이지)을 조회 · 확인 후 청약내용을 비교 · 확인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단, 신청시에 배우자가 누락되었거나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는 계약 후 추가로 재산검색을 실시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소명토록 함.
- ※ 발코니 확장형 선택 당첨자는 분양가격에 대한 계약금 외에 발코니 확장금액의 20%는 계약금, 80%는 잔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주택 계약 체결시 발코니확장 계약금 납부)



■ 계약시 구비서류(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자산에 관한 계약으로서 계약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아파트 계약용"이라고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신청접수 및 구비사항' 중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 사항의 경우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당첨자 선정 및 아파트 동·호 추첨 후 계약체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계약금 고지서는 계약 장소에서 적격자 여부를 확인 받은 후 발급 받아 납부하고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계약금(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만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포함)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을 취소함.**
- ※ **은평뉴타운1지구 아파트는 현재 준공된 상태이므로 1지구에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SH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에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은평구청(지적과)에 부동산실거래신고 대상임.**

구분	계약 시 구비 서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납부영수증 원본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 발코니확장금액 계약금영수증 포함) [계약금 고지서는 계약 장소에서 직접 수령 후 지정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에 납부]</li> <li>•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li> <li>• 주민등록등본 1통</li> <li>• 주택공급 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제출 생략)</li> </ul>
해당자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세대주기간이 3년, 5년 이상인 자 : 세대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1통 ※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시 구청, 동사무소 등 담당자에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li> <li>• 청약자(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및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포함) 1통</li> <li>• 단독세대주 및 미혼(이혼)자 :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포함) 1통</li> <li>•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신청자인 경우 :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li> <li>•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가 신청자인 경우 : 장애인 수첩 사본 1부 및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li> <li>• 세대주가 아닌 청약예금가입자 : 청약예금통장 또는 은행에서 확인한 청약예금가입확인서</li> <li>•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li> <li>•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li> <li>• 만30세 이전 혼인자 중 청약가점제로 당첨된 자 : 혼인관계증명서 1통</li> </ul>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 및 피부양 직계존속(65세 이상 노부모)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li> <li>• 피부양 직계존속(65세 이상 노부모)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피부양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에 한함)</li> <li>•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기준)</li> <li>- 미등기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기준)</li> <li>- 무허가건물확인서</li> <li>- 기타 무주택입증서류</li> </ul> </li> </ul>
제3자 대리 계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li> <li>- 당첨자의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1통</li> <li>-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장</li> </ul> </li> </ul>

■ 계약조건 등

-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1~3순위 자격 및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을 관리하게 되며 입주자저축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동일한 청약통장계좌로 이중 당첨된 자가 검색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선 당첨건을 유효처리하고, 후 당첨 건은 부적격처리하며 공급계약을 취소함. 다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두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을 비교하여 계약일자가 빠른 주택을 유효 처리함.
-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전용85㎡이하)은 1세대 1건의 청약신청만 가능하며, 이중으로 신청(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 또는 그 세대의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시 신청건수 전체를 무효 처리함. 단, 자신의 일반공급 신청일 현재까지 특별공급대상자로서의 선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3자녀 특별공급대상자는 일반공급 접수가 가능하나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이미 신청 접수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로 처리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첨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자가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국민주택(전용85㎡이하) 신청자의 경우 입주 시까지의 기간 중에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 기타 특별공급 당첨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 당첨된 자로 판명될 경우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판명될 경우
  -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및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청약 가정항목(무주택기간, 주택소유 현황, 부양가족수 등) 기재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민영주택에 한함)
  - 2002.9.5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될 경우(민영주택에 한함)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된 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을 포함하며, "당첨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를 참고하고, 신청 전에 과거 당첨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방식으로 주택공급을 신청·계약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위조,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저축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주택공급을 신청·계약한 경우
  - 서류결격 또는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등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통보내용(공사 홈페이지 '은평뉴타운 일반공급 당첨자 주택소유 현황 조회'란에 2008.9.19 18:00 게시)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의한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간 내에 아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기준
  2. 미등기주택의 경우 : 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기준)
  3. 기타 무주택입증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납입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 주택공급신청서상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의 동호는 평면유형별,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컴퓨터 추첨하므로 신청인이 주택의 방향, 평면 배치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아파트 배치구조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함.
- 마감재 등은 단지별, 평면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마감 수준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나 견본주택 또는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명칭 및 동별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향후 입주자모집공고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도시개발사업구역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내용 중 추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확장 전·후 세대의 상하배치,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및 시설물의 설치 내용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사업부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람**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특히 은평1지구는 현재 공사 준공 및 일부 세대는 입주를 한 상태이므로 청약 전에 단지 및 주변 여건에 대하여 확인을 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은 이 주택의 입주 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은평뉴타운1,2지구 ब्ल록 내 아파트 지상에 쓰레기 투입구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는 가까이 배치되어 있음.
- 은평뉴타운1,2지구 ब्ल록 내에 지상주차 공간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에 방해받을 수 있음.



- 1지구 12블럭 일부 등은 동남쪽 산에 인접하여 조망 등이 불리할 수 있으며, 사찰이 인접하여 있음.
- 1지구 821동, 822동 3층은 상가옥상과 인접(높이차이 없음)하여 있음.
- 1지구 801동 11호 라인은 거실 비확장형으로 발코니가 라운드형으로 설계·시공됨.
- 일부 1층 세대의 출입구는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엘리베이터 홀과 떨어져 있음.
- 발코니 확장 부위를 포함한 세대 마감의 경우 각 시공사별로 구조 및 인테리어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원하시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일부 세대는 입주 시에 사다리차 등을 이용할 수 없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운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1지구 B공구 못자리골 13,14블럭 및 2지구 A공구의 경우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세대 전면부와 후면부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서로 다를 수 있음.
- 은평뉴타운1,2지구 내 각 블럭별로 일부 아파트 동 형태가 G, L, C, R자 형으로 발코니 및 상가를 통하여 이웃 간에 실내 내부가 투시될 수 있음.
- 군사시설물과 묘지가 창릉천 주변 또는 진관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안에 있을 수 있음.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한 기존의 군부대 및 군 관련시설(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군사훈련, 작전 및 시설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제반 환경 및 기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내 기존의 군방호벽, 군진지, 군 막사 등의 대체시설로 설치되는 창릉천변 일대의 대전차 방호벽 및 군진지 등 군사시설과 서오름자연공원을 인접공원에 설치되는 군진지 등 진입로와 묘지 등에 대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은평뉴타운1,2지구 내 학교 및 다수의 종교시설 부지가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 신청 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기 바람. 토지이용현황은 개발계획변경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내에는 버스차고지, 택시차고지, 폐기물처리시설, 열공급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있음.
- 은평뉴타운1,2지구 내 아파트 동번호는 3~7개의 블럭을 통합한 1개의 슈퍼블럭 관리단위로 부여함.
- 은평뉴타운1,2지구 블럭 내 주차대수는 상가주차 포함이며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주차장은 통합하여 사용함.
- 생활가로변에 접한 세대는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차량통행으로 다소 소음 등 생활불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파트동 1,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지 및 진출입로의 별도 구획이 불가함. 단, 1지구는 상가 전용주차장을 별도 표시할 예정임.
- 은평뉴타운 1지구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는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실, 보육시설, 문고, 경로당,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2개)이 있고, 2지구 내는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보육시설, 경로당, 문고,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4개)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구파발역 인근(은평뉴타운2지구 1,12블럭 북서측[상업용지 맞은편])에 환경플랜트시설(자원회수시설, 쓰레기수송관로 자동집하시설)이 위치할 예정임.
- 진관근린공원 동쪽 편(연서로 인접 부근)에 탱크사격장이 있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은평뉴타운1지구 1~8블럭, 10~12블럭과 은평뉴타운2지구 1~5블럭, 11~12블럭은 분양과 임대주택을 혼합(Social Mix)하여 건립되며 이와 관련하여 임대와 분양주택이 같은 동에 있을 수 있음.
- 은평뉴타운1지구 2블럭 801동1,2호 라인의 1층은 아파트시설물(공용화장실, 필로티)이 설치될 예정임.
- 1지구 2블럭 C134B타입의 침실3의 전면 및 측면 발코니확장은 각각 확장되어 서로 연결되지 않음.
- 은평뉴타운1지구 7,8,10,11블럭은 2종의 용도지역(2종 일반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됨.
- 은평뉴타운1지구 9,11블럭은 학교로 출입이 가능한 보행 출입구가 설치됨.
- 은평뉴타운1지구 내에는 블럭간 공공보행도로 및 못자리골 13,14블럭에 보차혼용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동 통로는 지역 및 지구 전체 주민이 사용하는 통로임.
- 은평뉴타운1,2지구는 후분양 시행으로 건설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부득이 발코니 확장형과 기본형으로 나누어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확장형 주택은 일부 벽체의 단열공사 부위가 약간 돌출할 수 있음. 또한 발코니 확장면적은 확장 전 발코니면적 기준으로 확장 시 실유효면적 상이할 수 있음.
- 1지구 B공구 3블럭 708동 및 4블럭 702동 NC84B, NC84C, NC84L형은 가족공동생활 공간인 거실층에 공용화장실이 없음.
- 1지구 B공구 10블럭 711동 남측에 근린공원 관리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세대는 근접하고 있음.
- 1지구 A공구 및 C공구 중앙에 조성되는 공원 내 실개천은 우수배제를 위한 시설로 강우시에만 물이 흐름.
- 은평뉴타운2지구 12블럭 경계부 지상(지하)에 지하철3호선 구조물(환기구 및 본선)이 인접해 있어 등기부등본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으며, 1블럭 및 12블럭의 서측으로 지하철3호선이 통과하고 있어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분진·진동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및 제74조의2에 의거 문화재위원회 심의시 현상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은평뉴타운2지구 4,5,6,7블럭 사이 녹지상에 인접한 금성당(무속당집)에 대하여는 보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통일로변 방음벽 설치와 은평뉴타운3지구 1~4블럭간 지하철 지상구간에 방음터널 설치에 따른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은평뉴타운2지구 10블럭과 11블럭 사이 하천변 연결녹지 지하에 우수중계 펌프장이 설치됨.
- 은평뉴타운2지구 내 12블럭 서측으로 통로로가 통과하고 있어 진입부 연결 녹지부분에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지만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은평뉴타운2지구 내 1,11,12,13블럭은 26미터의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은평뉴타운2지구 1블럭은 학교로 출입이 가능한 보행출입구(통학로)가 설치됨.
- 은평뉴타운2지구 내에는 보차혼용도로(1,2,3,5,6,7,11블럭)가 관통하고, 통로 및 보차혼용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동 통로는 지역 및 지구 전체 주민이 사용하는 통로임.
- 2지구 A공구 1블럭 123동(48세대), 12블럭 106동(58세대), 13블럭 114동(27세대)는 발코니 비확장동임.
- 은평뉴타운 2지구 남측 갈현근린공원에서 발생하는 우수처리를 위한 관로가 13블럭 우수관로와 연결 통과함.
- 은평뉴타운 2지구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곳에서는 건축행위가 제한됨.
- 은평뉴타운 2지구에 있는 실개천의 용수공급은 유량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는 2010년 하반기에 통수 될 예정임.
- 은평뉴타운 2지구 A공구(1,12,13블럭) 각 세대 신발장의 경우 급수급탕 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은평뉴타운 2지구 A공구 1,12블럭 일부 세대의 경우 단지내 경사진 도로의 구배 또는 곡선 도로로 인하여 차량 전조등 불빛이 반사될 수 있음.
- 은평뉴타운사업구역 내 교육시설은 유치원 7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4개소로서 1지구는 초등학교(가칭 "진관초" 2008.9월 개교 예정), 중학교(가칭 "진관중" 2009.3월 개교 예정), 고등학교(가칭 "진관고" 2009.3월 개교 예정)이며 2지구에는 초등학교2(가칭 "상림초" 2009.3월 개교 예정)나 개교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개교 지연시에는 1지구 등 인근 초등학교로 통학이 불가피함, 1개교는 미정), 고등학교(웹미디어고)가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샷시 설치로 발코니 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께서는 수시로 샷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과 주택전시관(2지구의 주택형임)에는 전용면적별 대표 타입에 대한 시설물을 전시한 것이므로 시공회사별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되며, 타입별로 색상과 형태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주택전시관(2지구의 주택형임)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본 아파트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동등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과 주택전시관(2지구의 주택형임) 및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 위치, 창호 종류 및 위치, 벽체, 대피소 위치 등) 및 발코니 확장 부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SH공사 및 공사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세대에 설치된 대피 공간은 화재시 비상 대피 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는 SH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입주 후 입주자가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발코니 비확장세대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결로 등의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이에 대하여 SH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는 SH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중 입주시까지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람. 미제출로 인하여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따른 제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SH공사에서는 입주하신 후에 불편하지 않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S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에서도 보실 수 있음.

##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검색대상자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보며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등

▶ 각 단지별 아파트 브랜드명은 공동수급업체 중 아래와 같이 주간사 민간브랜드(대표 시공업체 브랜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 향후 시공사의 사정에 의해 브랜드를 변경 시에는 아래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음)

블럭명	브랜드명	시공업체	감리 현황	
			감리회사명	감리금액(천원·VAT포함)
1지구A공구 1,2,12블럭	롯데캐슬	롯데건설(주), 삼환기업(주)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4,414,804
1지구B공구 3,4,10,11,13,14블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 (주)태영	(주)무영아멕스 건축사사무소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5,449,582
1지구C공구 5,6,7,8블럭	푸르지오	(주)대우건설, SK건설(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4,265,978
2지구A공구 1,12,13블럭	힐스테이트	(주)현대건설, (주)태영	(주)무영아멕스건축사사무소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	3,513,625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 등 주요 항목별로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1지구 [금액단위 : 천원, ( )공급면적 m<sup>2</sup>당 금액]

구 분	분양가 공개 항목								택지 매입원가
	합 계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1블럭	148,916,406 (3,709)	86,729,561 (2,160)	51,338,364 (1,279)	4,130,673 (103)	1,770,288 (44)	1,180,192 (29)	590,096 (15)	3,177,232 (79)	96,975,225 (2,415)
2블럭	115,688,008 (3,736)	67,215,423 (2,171)	40,191,967 (1,298)	3,233,836 (104)	1,385,930 (45)	923,953 (30)	461,977 (15)	2,274,922 (73)	79,833,520 (2,579)
3블럭	85,805,183 (3,506)	48,310,443 (1,974)	31,105,391 (1,271)	2,502,733 (102)	1,072,600 (44)	715,066 (29)	357,533 (15)	1,741,417 (71)	53,524,525 (2,188)
4블럭	83,353,477 (3,525)	47,053,648 (1,989)	29,964,028 (1,267)	2,410,899 (102)	1,033,242 (44)	688,828 (29)	344,414 (15)	1,858,418 (79)	52,282,320 (2,210)
5블럭	114,364,424 (3,786)	65,567,060 (2,171)	40,429,333 (1,338)	3,252,935 (108)	1,394,115 (46)	929,410 (31)	464,705 (15)	2,326,866 (77)	74,598,060 (2,470)
6블럭	75,955,790 (3,419)	43,348,049 (1,951)	26,889,047 (1,210)	2,163,487 (97)	927,209 (42)	618,139 (28)	309,070 (14)	1,700,789 (77)	48,527,435 (2,184)
7블럭	127,681,477 (3,561)	74,232,173 (2,071)	44,288,831 (1,235)	3,563,469 (99)	1,527,201 (43)	1,018,134 (28)	509,067 (14)	2,542,602 (71)	82,682,240 (2,306)
8블럭	54,582,777 (3,766)	32,114,221 (2,216)	18,553,295 (1,280)	1,492,794 (103)	639,769 (44)	426,513 (29)	213,256 (15)	1,142,929 (79)	36,098,020 (2,491)
10블럭	52,792,854 (3,774)	31,419,637 (2,247)	17,554,712 (1,255)	1,412,448 (101)	605,335 (43)	403,557 (29)	201,778 (14)	1,195,387 (85)	34,815,125 (2,490)
11블럭	40,108,830 (3,553)	23,074,216 (2,044)	14,075,228 (1,247)	1,132,490 (100)	485,353 (43)	323,568 (29)	161,784 (14)	856,191 (76)	25,309,690 (2,242)
12블럭	157,587,727 (3,560)	91,260,134 (2,061)	55,014,618 (1,243)	4,426,464 (100)	1,897,056 (43)	1,264,704 (29)	632,352 (14)	3,092,399 (70)	100,259,060 (2,264)
13블럭	185,083,462 (3,969)	114,151,799 (2,448)	59,139,638 (1,268)	4,758,362 (102)	2,039,298 (44)	1,359,532 (29)	679,766 (15)	2,955,067 (83)	123,797,880 (2,655)
14블럭	192,827,277 (3,976)	118,151,770 (2,436)	62,275,256 (1,284)	5,010,653 (103)	2,147,423 (44)	1,431,615 (30)	715,808 (15)	3,094,752 (84)	130,902,750 (2,699)
합 계	1,434,747,692 (3,710)	842,628,134 (2,179)	490,819,708 (1,269)	39,491,243 (102)	16,924,819 (44)	11,283,211 (29)	5,641,606 (15)	27,958,973 (72)	939,605,850 (2,430)

-2지구 [금액단위 : 천원, ( )공급면적 m<sup>2</sup>당 금액]

구 분	분양가 공개 항목								택지 매입원가
	합 계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1블럭	36,285,437 (3,833)	21,225,915 (2,243)	13,084,920 (1,383)	485,701 (51)	362,025 (38)	193,152 (20)	193,328 (20)	740,396 (78)	22,420,494 (2,369)
12블럭	24,601,140 (3,349)	14,642,130 (1,994)	8,600,105 (1,171)	319,228 (43)	237,942 (32)	126,950 (17)	127,066 (20)	547,719 (75)	15,550,933 (2,118)
13블럭	28,655,256 (4,065)	17,602,925 (2,497)	9,566,434 (1,357)	355,097 (50)	264,678 (38)	141,214 (20)	141,344 (20)	583,564 (83)	18,373,429 (2,607)
합계	89,541,833 (3,753)	53,470,970 (2,242)	31,251,459 (1,310)	1,160,026 (49)	864,645 (36)	461,316 (19)	461,738 (19)	1,871,679 (78)	56,344,856 (2,362)

▶ 가산비용 내역 및 산출근거

-1지구

구 분	합 계	건축비 가산 비용[천원]				
		친환경인증	초과복리시설	홈트트워크	집진청소시스템	기간이자
1블럭	3,177,232 (79)	452,853 (11)	367,142 (9)	225,444 (6)	97,209 (2)	2,034,584 (51)
2블럭	2,274,922 (73)	343,647 (11)	246,524 (8)	142,642 (5)	77,431 (3)	1,464,678 (46)
3블럭	1,741,417 (71)	278,068 (11)	218,078 (9)	79,494 (3)	45,621 (2)	1,120,156 (46)
4블럭	1,858,418 (79)	268,741 (11)	340,747 (14)	89,751 (4)	48,447 (2)	1,110,732 (48)
5블럭	2,326,866 (77)	334,911 (11)	229,089 (8)	195,439 (6)	27,968 (1)	1,539,459 (51)
6블럭	1,700,789 (77)	245,904 (11)	173,904 (8)	191,347 (9)	17,816 (1)	1,071,818 (48)
7블럭	2,542,602 (71)	401,961 (11)	169,332 (5)	256,434 (7)	27,902 (1)	1,686,973 (47)
8블럭	1,142,929 (79)	165,126 (11)	154,092 (11)	105,760 (7)	13,461 (1)	704,490 (49)
10블럭	1,195,387 (85)	159,455 (11)	297,426 (21)	67,265 (5)	42,921 (3)	628,320 (45)
11블럭	856,191 (76)	124,793 (11)	109,166 (10)	58,853 (5)	30,846 (3)	532,533 (47)
12블럭	3,092,399 (70)	490,306 (11)	288,785 (7)	240,900 (5)	67,557 (2)	2,004,851 (45)
13블럭	2,955,067 (63)	512,132 (11)	125,433 (3)	196,310 (4)	196,984 (4)	1,924,208 (41)
14블럭	3,094,752 (64)	539,395 (11)	123,975 (3)	201,615 (4)	203,535 (4)	2,026,232 (42)
합 계	27,958,973 (72)	4,317,290 (11)	2,843,693 (7)	2,051,254 (5)	897,698 (2)	17,849,034 (46)

-2지구

구 분	합 계	건축비 가산 비용[천원]				
		친환경인증	초과복리시설	홈네트워크	집진청소시스템	기간이자
1블럭	740,396 (78)	109,499 (12)	9,128 (1)	45,969 (5)	45,548 (5)	530,252 (55)
12블럭	547,719 (75)	82,749 (11)	11,556 (2)	40,749 (6)	8,030 (1)	404,635 (55)
13블럭	583,564 (83)	81,110 (12)	24,255 (3)	51,573 (7)	38,220 (6)	388,406 (55)
합 계	1,871,679 (78)	273,358 (11)	44,939 (2)	138,291 (6)	91,798 (4)	1,323,293 (55)

▶ 감정평가기관 및 감정평가액  
-1지구

구 분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총액[천원]
1블럭	한국감정원, 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	96,975,225
2블럭	한국감정원,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79,833,520
3블럭	한국감정원, 경일감정평가법인	53,524,525
4블럭	한국감정원, 대화감정평가법인	52,282,320
5블럭	한국감정원,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74,598,060
6블럭	한국감정원,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	48,527,435
7블럭	한국감정원, 대일세셋감정평가법인	82,682,240
8블럭	한국감정원, 삼창감정평가법인	36,098,020
10블럭	한국감정원, 제일감정평가법인	34,815,125
11블럭	한국감정원, 대한감정평가법인	25,309,690
12블럭	한국감정원, 나라감정평가법인	100,259,060
13블럭	한국감정원, 태평양감정평가법인	123,797,880
14블럭	한국감정원, 가온감정평가법인	130,902,750

-2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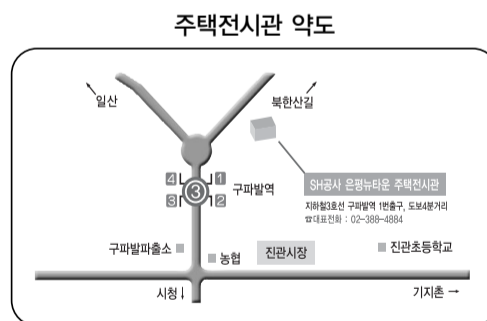
구 분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총액[천원]
1블럭	한국감정원, 태평양감정평가법인	22,420,494
12블럭	한국감정원, 태평양감정평가법인	15,550,933
13블럭	한국감정원, 태평양감정평가법인	18,373,429

■ 중도금·잔금 납부 및 선납할인 안내

- ▶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중도금은 납부기한(잔금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1일 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연6%(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드리고, 분양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연14%(변동금리)의 연체료가 가산됨.  
[발코니 확장 금액도 동일한 조건임]
- ▶ 중도금 및 잔금 고지서는 납부기한일 전에 분양계약서상 주소지로 우편발송하며, 주소변경 및 배달착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지서가 납부기한내 미도착할 경우에는 반드시 SH공사 분양팀에 확인하거나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발급 받아 연체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홈페이지 납부금고지서 발급 방법 :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좌측 하단 납부금 조회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아파트 분양금 조회 → 납부내역에서 중도금 등 확인 후 고지서 재발행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 은평뉴타운 1지구의 경우 현재 준공된 상태이므로 분양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완납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 이전에도 입주가 가능함.

■ 사이버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및 주택전시관 운영

- ▶ 개관일시
  - 사이버모델하우스 운영 : 2008.8.4(월)부터
  - 2지구 견본주택 공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대상) : 2008.9.19(금)~21(일) 10:00~17:00  
- 84㎡(A형) : 1블럭 126동 302호, 101㎡(A형) : 1블럭 124동 103호, 134㎡(A형) : 1블럭 122동 101호  
※ 2지구의 경우 전용면적별 대표 타입을 공개하고 현장 여건상 나머지 타입은 공개하지 않으며, 1지구의 경우에는 공사 준공 및 입주 중인 관계로 견본주택 운영하지 않음.  
※ 견본주택 배치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 현장을 방문하시는 당첨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현장 안내문에 정해진 코스대로 이동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안전사고 등을 감안하여 절대 출입 불가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SH공사 및 건설현장에서 책임지지 않음.  
※ 견본주택 방문시 본인 신분증과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 ▶ 주택전시관 운영 : 2007.11.15(목)부터 계속 운영 중임
  - ※ 주택전시관은 2지구 전용면적별 대표 타입의 주택 모형이 전시된 것으로서 공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금회 공급대상은 1지구 및 2지구 A공구임)
  - ※ 견본주택 및 주택전시관 방문 시 현장 혼잡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통편 : 구파발역(3호선) ①번 출구(도보 10~15분)



문의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li> <li>• SH공사 콜센터 : (02)1600-3456</li> <li>• 분양팀 팩스 : (02)3410-7502</li> <li>• 주택전시관 : (02)388-4884</li> </ul>

※ 본 입주자모집 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철거예정가옥"의 매매를 통해 우면,세곡,강일2,은평지구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중개·알선하는 경우가 있으나, 「입주권」은 "철거예정가옥" 소재지 관할구청의 엄격한 자격심사에 의하여 부여되고 상가지구에 확정된 입주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철거예정가옥(속칭, 물딱지)을 매입하게 될 경우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008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 공사

www.i-sh.co.kr

“100년 전의 서울과 100년 후의 서울이 만났습니다”



##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첫 결실 - 은평뉴타운 2008년 6월 4,514가구 첫 입주

### ■ 더불어 사는 미래형 커뮤니티 조성

- 다양한 세대, 계층이 더불어 사는 이음문화 창출
- 이웃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유형 도입
- 각 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가로를 조성,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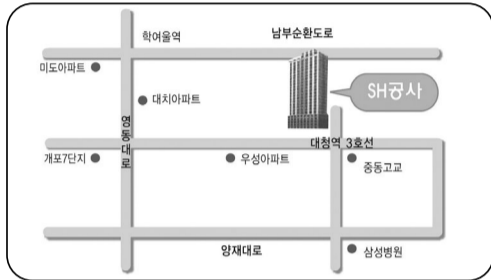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120**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시외전화는 02-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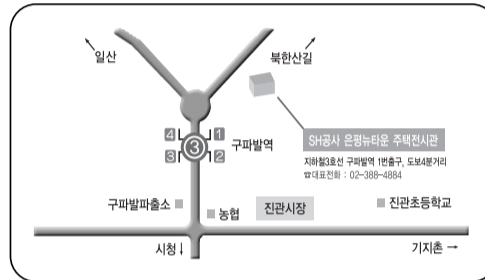
 **Shift 콜센터**  
(02)1600-3456



SH공사 약도(방문신청 및 계약장소)



주택전시관 약도



문의 전화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SH공사 콜센터 : (02)1600-3456
- 분양팀 팩스 : (02)3410-7502
- 주택전시관 : (02)388-4884

※ 본 입주자모집 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철거예정가옥”의 매매를 통해 우면,세곡,강일2,은평지구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중개·알선하는 경우가 있으나, 「입주권」은 “철거예정가옥” 소재지 관할구청의 엄격한 자격심사에 의하여 부여되고 상가지구에 확정된 입주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철거예정가옥(속칭, 물딱지)을 매입하게 될 경우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008년 7월 30일